

발 간 등 록 번 호
11-1520000-000474-01

출원 방식심사 지침서

2008. 12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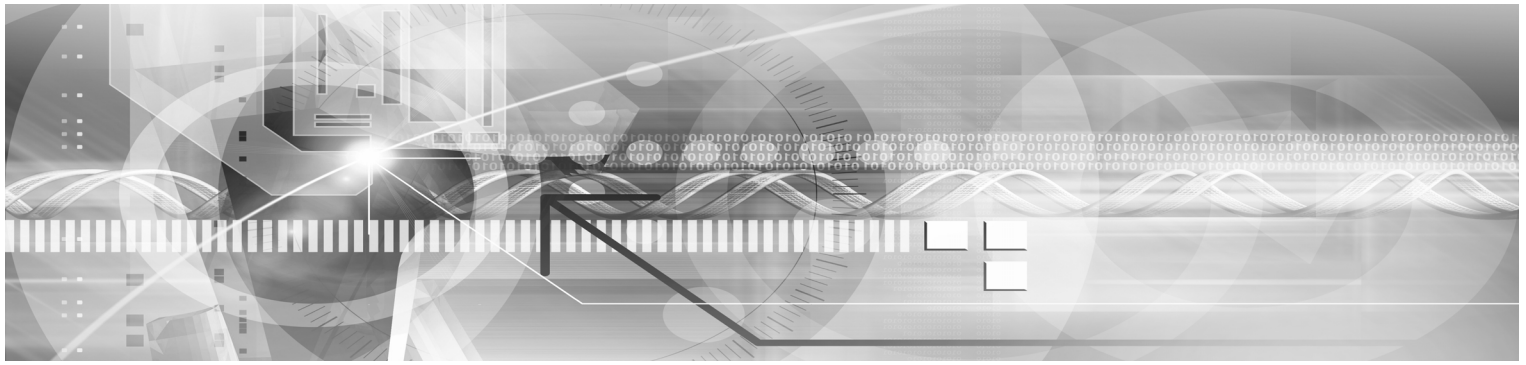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20000-000474-01

출원 방식심사 지침서

2008. 12



발 간 사 ▶▶▶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산업재산권은 개인에게는 독점·배타적 권리이자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38만여 건으로써 세계 4위에 이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특허청은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심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고객 맞춤형 「3 track 특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식창출물인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절차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올바른 권리를 창출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절차를 심사하고 흠결을 치유하도록 안내하는 출원 방식심사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심사를 위해서는 법령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방식담당자들에게 더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충실한 방식심사가 특허청이 지향하는 세계최고의 심사품질을 달성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업무추진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를 습득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완수정한 「출원방식심사 지침서」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 발간된 지침서에 법령의 변경내용(2009년 시행내용 포함), 실무적으로 적용 해온 기준의 명확화, 권리관계에 적용되는 타법의 주요내용 등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편집체계를 대폭 조정하여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본 지침서의 연혁을 정리·첨부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시켜 나가는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지침서가 업무담당자나 출원인 등 관계인에게 산업재산권 출원의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2008. 12.

고객서비스국장

이영근



일 러 두 기 ▶▶▶

1. 본 지침서는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방식심사지침서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절차와 관련된 일반규정 및 방식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개괄하고, 방식심사 실무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적용과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이 지침서는 2008. 11.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의 내용이 관련법령 및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의 해석·적용을 구속하지 아니하며,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는 이 지침을 법령해석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 지침서에 사용된 약어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 → 특허법
특령 → 특허법시행령
특칙 → 특허법시행규칙
실 → 실용신안법
실칙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디 → 디자인보호법
디칙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상 → 상표법

상칙 → 상표법시행규칙

징수규칙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민 → 민법

민소 → 민사소송법

증명고시 →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납부요령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중 보정료 납부요령

출원규정 →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11①1 → 법 제11조제1항제1호

C·o·n·t·e·n·t·s

차 례

제1편 출원절차 일반

1. 출원의 종류	3
1.1. 특허출원	3
1.2. 실용신안등록출원	7
1.3. 디자인등록출원	11
1.4. 상표등록출원	15
2. 출원의 절차	20
2.1. 출원인·대리인 등록	20
2.2. 출원서류의 작성	22
2.3. 출원서류의 제출	23
3. 출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27
3.1. 출원서류의 접수	27
3.2. 출원서류의 처리	29
3.3. 출원서류의 관리	29

제2편 출원방식심사 일반

1. 출원방식심사	33
1.1. 의의	33
1.2. 법적 근거	33
1.3. 담당 부서	33





2. 출원방식심사의 대상	34
3. 출원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37
3.1. 제출서류의 반려	37
3.2. 절차의 보정명령	41
3.3. 절차의 보완명령	42
3.4. 서류의 제출명령	44
3.5. 절차의 무효	45
3.6. 무효처분의 취소	46
3.7. 방식심사결과 결함유형별 처리예시	48

제3편 출원방식심사 기준

1. 출원인	53
1.1.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55
1.2.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56
1.3. 권리능력 일반	57
1.4. 권리능력 유무의 판단	58
1.5. 절차능력 일반	60
1.6. 복수당사자 대표 등	61
1.7. 내국인의 권리능력	62
1.8. 외국인의 권리능력	63
1.9. 무국적자의 권리능력	66
1.10. 법인의 권리능력	67
1.11. 국가의 권리능력	68
1.12.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69
1.13. 법인이 아닌 단체의 당사자능력	70

C·o·n·t·e·n·t·s

1.14. 법인격 없는 단체명칭으로 출원한 경우의 취급	71
1.15. 청산중인 회사의 권리능력	72
1.16.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73
1.17. 출원서 등의 인적사항 등 기재방법	74
1.18.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76
1.19. 외국어로 된 증명서 등에 있어서의 법인명칭 기재	77
1.20. 서류간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78
1.21. 출원인(대리인)의 인장	79
1.22. 출원·등록건의 일괄 정보변경 체계	80
1.23. 출원인 정보(성명, 주소, 인감 등)의 변경 또는 경정신고	81
1.24. 출원인 성명(명칭) 경정에 관한 절차	83
1.25. 출원인 정보변경(경정)시 신고사실 증명서류의 유형	84
 2. 대리인	 85
2.1. 대리인	87
2.2. 출원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88
2.3. 대리인의 개별대리	89
2.4. 특허법인	90
2.5. 미성년자 등의 절차대리인	91
2.6.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92
2.7.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93
2.8. 임의대리인과 특별수권	94
2.9. 재외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	96
2.10. 특허관리인이 없는 경우	97
2.11. 대리인의 선임	98
2.1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100
2.13.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101
2.14. 포괄위임	102



2.15. 대리인의 중도수임	103
2.16. 복대리인의 선임	104
2.17. 특허법인 설립에 따른 복대리인 선임신고 절차	105
2.18. 복대리인의 권한	106
2.19.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복임권	107
2.20.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복대리인의 지위	108
2.21. 대리권 불소멸에 관한 규정의 해석	109
2.22. 공동출원인 중 일부의 자만이 대리인이 있는 경우	110
2.23. 특허청장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개임명령	111
2.24. 실용신안기술평가에 관한 절차를 밟는 대리인	112
 3. 출원서류	 113
3.1. 출원관련 서류의 접수	115
3.2.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의 효력발생 시기	118
3.3. 접수서류의 기초방식	120
3.4. 전자화대상 서류의 처리	121
3.5.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	122
3.6. 접수서류의 보관·관리	123
3.7. 서류 등의 열람·복사신청	124
3.8. 서류의 인증절차	126
3.9. 서류의 송달(통지) 대상	127
3.10. 서류의 송달(통지) 방법	128
3.11. 송달처가 불분명한 서류의 송달방법(공시송달)	129
3.12. 공시송달 절차	130
3.13. 재외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절차	131
3.14. 특허청이 송달하는 서류의 수신인	132
3.15. 특허청이 송달하는 서류의 송달장소	133
3.16. 공동출원시 출원서의 기재 방법	134

Contents

3.17. 서류의 사용어	135
3.18. 특허청구범위를 미기재한 출원서에 대한 처리	136
3.19.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137
3.20.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	139
3.21. 국방관련 출원	141
3.22. 증명서류의 원용	142
3.2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144
4. 분할·변경·이중 출원	147
4.1. 분할출원의 절차적 요건	149
4.2. 출원 상호간 변경출원(특허 ↔ 실용신안)	152
4.3. 상표의 변경출원	154
4.4. 방식상의 하자를 갖는 출원의 변경출원	155
4.5.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분할·변경출원이 동시에 청구된 경우	156
4.6. 이중출원의 절차적 요건(특허·실용신안)	157
4.7. 이중출원과 분할출원의 관계	159
4.8. 분할·변경·이중 출원시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적용	160
4.9. 분할·변경·이중 출원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161
4.10. 원출원의 무효와 분할·변경·이중출원	162
4.11. 원출원의 취하·포기일과 같은 날에 출원된 분할·변경· 이중출원의 취급	163
5. 절차의 보정	165
5.1. 특허청장이 명하는 보정의 범위	167
5.2. 보정된 명세서·도면을 재보정하는 경우	168
5.3. 발명(고안·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경우	169





5.4. 지정기간 경과후 제출된 출원서등 보정서	170
5.5. 절차보정 완료후 새로운 보정사항이 발견된 경우	171
5.6. 보정명령 사항과 무관한 자진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172
5.7. 지정기간내에 보정명령 사항중 일부만 보정한 경우	173
5.8. 복수의 보정서로 보정을 행하는 경우	174
5.9. 보정서·의견서·답변서 등의 서식만이 제출된 경우	176
5.10. 보정서 서식없이 보정내용만 제출된 경우	177
5.11. 1건의 서류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178
5.12. 기준일 이전에 제출된 명세서 등 보정서	179
5.13. 보정료 납부대상	180
5.14. 기간경과 후 제출된 보정서의 수수료 징수여부	182
5.15.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 등의 취급	183
 6. 우선권 주장	 185
6.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	187
6.2.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특허·실용신안)	191
6.3. 파리조약 제4조A(2)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	194
6.4. 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에 관한 취급(특허·실용신안)	195
6.5. 가공의 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의 취급 ...	196
6.6. WTO 회원국간의 우선권주장 출원	197
 7. 기타 절차	 199
7.1. 출원인변경신고의 취급절차	201
7.2. 중간의 출원인변경신고를 생략한 출원인변경신고	205
7.3. 공동출원인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	206
7.4. 방식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출원의 취하·포기	207
7.5. 출원취하의 취하가 가능한지의 여부	209

C·o·n·t·e·n·t·s

7.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의 절차	210
7.7. 정보제공에 대한 취급	211
8. 기간	213
8.1. 기간의 종류	215
8.2. 특허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216
8.3. 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222
8.4. 디자인등록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228
8.5. 상표등록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230
8.6. 출원절차와 관련된 지정기간	232
8.7. 특허법 제14조 기간계산 규정의 적용범위	234
8.8. 기간의 계산	235
8.9. 기간의 연장대상 및 요건	237
8.10. 지정기간의 지정절차	238
8.11. 지정기간의 연장·단축 절차	239
8.12. 법정기간의 연장절차	241
8.13.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의 기간계산	242
8.14.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243
8.15. 심사청구기간	244
9. 수수료	247
9.1. 출원심사청구료	249
9.2. 심사청구료 산출시 청구범위 항수 계산	250
9.3. 상표출원의 보정후 상품류 구분 또는 지정상품 변동에 따른 수수료 계산	252
9.4. 다류지정상표출원의 분할출원시 수수료 계산	253
9.5. 수수료의 반환	255
9.6. 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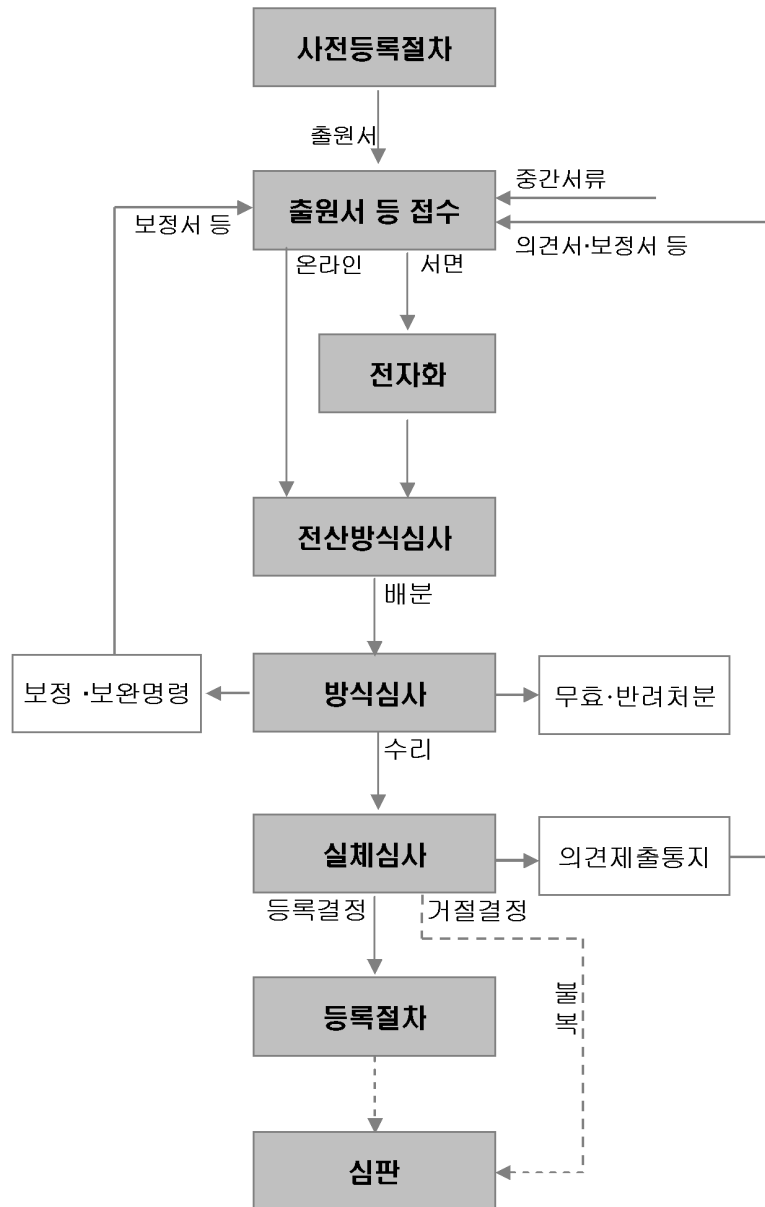


9.8. 수수료가 미납된 서류(기간연장신청서·보정서 등)의 취급	259
9.9. 수수료의 감면	260

제4편 부 록

1. 연도별 방식심사지침서 변경·보완 사항	267
1.1. 2000년	267
1.2. 2002년	267
1.3. 2006년	267
1.4. 2008년	267
2. 관련 법령	270
2.1. 민법	270
2.2. 민사소송법	280
2.3. 상법	284
2.4. 행정절차법	285
2.5. 중소기업기본법	288
2.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89
2.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93
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5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현황	297
4. 주요기간 일람표	298
5. 출원관련 수수료	300

※ 출원절차 흐름도



제1편 출원절차 일반



1. 출원의 종류

1.1. 특허출원

(1) 출원인 적격

-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당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33①)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특§33②, §44)

(2) 출원에 필요한 서류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에 명세서·필요한 도면·요약서 및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42·특칙§21)

① 출원서 기재사항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고유번호(코드번호)
-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변리사의 성명), 고유번호(코드번호)
-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고유번호(코드번호)
- 분할출원시, 변경출원시 또는 이중출원시에는 그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표시
- 우선권주장 출원시에는 그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표시

② 명세서 기재사항

- 발명의 명칭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범위

(3) 1발명 1출원주의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특§45①)

(4) 분할출원

- ① 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특§52①)
- ②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특칙§29③)
- ③ 분할된 특허출원은 원특허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특§52②)
 - 법 제30조제2항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출원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제출 및 증명서류 제출)
 - 법 제54조제3항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시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
 - 법 제55조제2항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시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

- ④ 분할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우선권 증명서류를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특\$52④)

(5) 이중출원(원출원이 1999. 7. 1. 이후, 2006. 9.30. 이전 출원에 적용)

-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실용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구 특\$53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을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구 특\$53②)
- ③ 이중출원이 있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때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이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구 특\$53③)
 - 적용규정 : 분할출원시 출원일 불소급 경우와 동일
- ④ 이중출원에 있어서 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우선권 증명서류를 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구 특\$53④)

(6) 변경출원(2006.10.01. 이후 출원에 적용)

-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특\$53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53②)
- 적용규정 : 분할출원시 출원일 불소급 경우와 동일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특§53③)
-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특§53④)
-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조의3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특§53⑤)
- ⑥ 변경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우선권 증명서류를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특§53⑥)

(7)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특령§7)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특§89)

-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이후에는 할 수 없다.(특§90②)
- ③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특령§7)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3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1.2. 실용신안등록출원

(1) 출원인 적격

- ① 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당해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실§11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33①)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고안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실§11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33②·§44)

(2) 출원에 필요한 서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출원서에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실§8·실칙§3)

① 출원서 기재사항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고유번호(코드번호)
-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변리사의 성명), 고유번호(코드번호)
- 고안의 명칭
-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고유번호(코드번호)
- 분할출원시, 변경출원시 또는 이중출원시에는 그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표시
- 우선권주장 출원시에는 그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표시

② 명세서 기재사항

- 고안의 명칭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고안의 상세한 설명
-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3) 1고안 1출원주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을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고안에 대하여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실§9)

(4) 분할출원

-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2이상의 고안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 그 일부를 1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분할출원할 수 있다. (실§11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52①)

- ②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실칙§17①에서 준용하는 특허§29③).
- ③ 분할된 출원은 원실용신안등록 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실§11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52②)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출원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제출 및 증명서류 제출)
 -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시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
 -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시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
- ④ 분할출원에 있어서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우선권 증명서류를 분할출원 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실§11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52④)

(5) 이중출원(원출원이 1999. 7. 1. 이후, 2006. 9.30. 이전 출원에 적용)

- ① 특허출원을 한 자는 특허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통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또는 최초의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구 실§17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을 하는 자는 실용실안등록 출원시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해야한다.(구 실§17②)

③ 이중출원이 있는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을 한때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이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구 실§17③)

- 적용규정 : 분할 출원시 출원일 불소급 경우와 동일

④ 이중출원에 있어서 구 법제 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우선권 증명서류를 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구 실§17④)

(6) 변경출원(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실§10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경출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실§10②)

- 적용규정 : 분할출원시 출원일 불소급 경우와 동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실§10③)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실§10④)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조의3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실§10⑤)

⑥ 변경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우선권 증명서류를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실§10⑥)

1.3. 디자인등록출원

(1) 출원인 적격

①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당해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디§3①)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디§3②·디§10)

(2) 출원에 필요한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도면을 첨부한 출원서와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디§9·디칙§5)

① 출원서 기재사항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고유번호(코드번호)
-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변리사의 성명), 고유번호(코드번호)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및 디자인의 일련번호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수 및 일련번호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출원번호
-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고유번호(코드번호)
- 분할출원시 또는 변경출원시에는 그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표시
- 우선권주장 출원시에는 그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표시
- 첨부서류(도면, 사진, 견본 등)

② 도면의 기재사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3) 1디자인 1출원주의

- 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디§11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디§11②)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20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디§11의2①)
-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물품 구분상 대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 한다.(디§11의2②·디칙§9④)
-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으나(디§11의2③),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 출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디§11의2④)

(5)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 중 A1류(제조식품 및 기호품), B1류(의복), C1류(침구류, 마루깔개, 커튼 등), F3류(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F4류(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M1류(직물지, 판, 끈 등)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디칙§9③)

(6) 분할출원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는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디§19①)
- ②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디§19②)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적용을 주장하는 출원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의 제출 및 출원일부터 30일이내 그 증명서류의 제출)

③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할 수 있다.(디§19③)

④ 분할출원시에는 원출원의 내용을 1또는 2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도의 디자인등록분할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디칙§11)

(7) 변경출원(2005. 6. 30. 이전 출원에 적용)¹⁾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과 단독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출원은 구법 제8조제2항 또는 구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구 디§20①,② · 디§20의2①,②)

② 변경출원은 최초에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구 디§20③ · 디§20의2③)

1) 2005. 7. 1. 이후 출원의 변경은 출원서등 보정서를 통하여 행한다.

1.4. 상표등록출원

(1) 출원인 적격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다.(상§3)

(2) 출원에 필요한 서류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상표견본을 첨부한 출원서와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9·상칙§4)

① 출원서 기재사항

-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고유번호(코드번호)
-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변리사의 성명), 고유번호(코드번호)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경우에는 그 취지
- 입체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
- 지정상품 및 그 류구분
-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시에는 그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표시 및 분할 또는 변경의 대상(상품류 및 지정상품)
- 우선권주장 출원시에는 그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표시
-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기타사항

- 단체표장등록출원 :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및 요약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9③·상칙§4①,⑥)
- ※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상령§1의2①)
 -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기재사항(상령§1의2②)
 - 위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 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 ※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령§1의3)
 -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

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업무표장등록출원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상§9④)

(3) 1상표 1출원주의

-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상 1류 구분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업을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상§10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상§10②)

(4) 분할출원 · 분할이전출원

- ① 출원인은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은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시에 그 취지 · 최초출원 국가 · 출원년월일 기재 및 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그 증명서류의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출원시의 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출원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의 제출 및 출원일부터 30일이내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적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최초에 출원한 때에 상표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상§18②)
- ②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상칙§11②)

- ③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상§12②)

(5) 변경출원

- ①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제외) 상호간에 출원을 변경할 수 있다.(상§19①)
- ② 변경된 출원은 변경전의 최초 출원시 출원을 한 것으로 보며(상§19③),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상§19⑤)
- ③ 변경출원은 최초에 한 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상§19④)

(6)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갱신등록출원의 분할

-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상§42)
-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나, 이 기간에 출원을 아니한 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출원할 수 있다.(상§43②)
-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상§43③)
- ④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상§44①)
- 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이상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상\$44②, ③)

(7)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 ①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1998년 3월 1일 전) 종전의 구 한국상품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니스분류)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상\$46의2①)
-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상\$46의2③)
-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상\$46의2④)
- 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의 상품으로 되어 있어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상\$46의3①)
- 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거나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분할된 경우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원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때에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8)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47①)

2. 출원의 절차

2.1. 출원인·대리인 등록

(1) 고유번호의 기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및 그 대리인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자기의 고유번호(출원인코드·대리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28의2·실§3·디§4·상§5)

※ 출원인코드부여 미신청시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는 경우 (특칙§9①)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심사청구인, 정정청구인, 우선심사신청인,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심판청구인·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질권자

(2) 코드등록의 대상 및 내용

○ 등록 대상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모든 출원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 포함)
- 대리인(법정대리인, 변리사 이외의 임의 대리인 포함)
- ※ 단 법정대리인, 특허법인 및 변리사 이외의 임의대리인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 법정대리인 등 란에 기재함.
- 제3자(이의신청, 이의답변, 정정청구, 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정보제출을 하는 자 등)
- '99년 이전 계류중인 건에 해당하는 출원인도 의무 적용

○ 등록 내용

- 출원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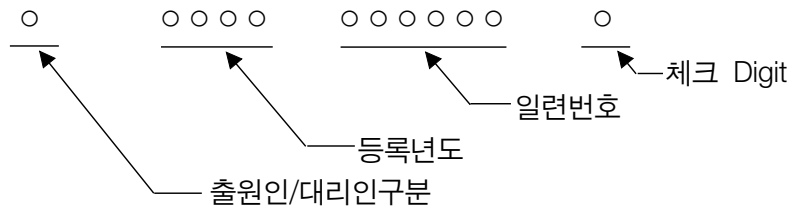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행위능력 여부, 인감 또는 서명²⁾ 등

- 대리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국문, 영문), 인감 또는 서명 등

○ 코드 체계 및 적용 범위

- 코드의 구성(12자리의 숫자)



(3) 포괄위임등록

-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필한 후 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특칙§5의2·실칙§17①·디칙§28·상칙§36)
- ②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특칙§10③2·실칙§17①·디칙§28·상칙§36)

2) 종전에는 인감만 인정되었으나, 2009.1.1.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인감 외에 서명도 인정하게 되었다.

2.2. 출원서류의 작성

(1) 전자문서에 의한 출원

-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 기타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특§28의3·실§3·디§4·상§5)
- ② 전자문서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에게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특§28의4·실§3·디§4·상§5)

(2) 서면에 의한 출원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고유번호(출원인코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특칙§2·실칙§17①·디칙§28·상칙§36)

(3) 서류의 사용어

- ①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특칙§4① · 실칙§17① · 디칙§1의4① · 상칙§1의4①)
- ② 위임장 · 국적증명서 등(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제외)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에는 그 서류의 제출시에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특칙§4 · 실칙§17① · 디칙§1의4②)
- ※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외국어로 기재한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에는 그 서류 제출시에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칙§1의4②)

2.3. 출원서류의 제출

(1) 서류의 수신인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특칙§3① · 실칙§17① · 디칙§28 · 상칙§36)

(2) 전자문서의 제출

-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칙§9의4 · 실칙§17① · 디칙§28 · 상칙§36)
-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그중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특칙§9의7 · 실칙§17① · 디칙§28 · 상칙§36)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특칙§9의4③·실칙§17①·디칙§28·상칙§36·정보통신망등의 장애발생시 기한 연장에 관한 고시§3)

(3) 첨부서류의 제출

- ①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특칙§9의5·실칙§17①·디칙§28·상칙§36)
- ② 첨부서류의 유형
-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상표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특칙§7①·실칙§17①·디칙§28·상칙§36)
 -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 §7② · 실칙§17① · 디칙§28 · 상칙§36)

○ 대리인의 선임 등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선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특칙 §5 · 실칙§17① · 디칙§28 · 상칙§36)

○ 포괄위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포괄위임장)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특칙§5의2 · 실칙§17① · 디칙§28 · 상칙§36)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2인 이상이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출원과 동시에 대표자 선임을 하려면 출원서 상 출원인코드란 하단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 대표자를 기재하고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제출 이후 대표자선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대표자선임신고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특칙§6 · 실칙§17① · 디칙§28 · 상칙§36)

○ 법인증명 또는 법인국적증명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출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증명 또는 법인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특칙§8① · 실칙§17① · 디칙§28 · 상칙§36 · 출원규정§4④)

- 출원서의 출원인명칭에 법인임을 나타내는 자구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법인의 국적과 법인의 주소가 그 국가 이외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

○ 국적증명서

외국인이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출원인의 주소가 그 국가의 주소가 아닌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무국적자는 그 뜻을 본인이 자술한 선서로서 국적증명서를 갈음한다.(특칙§8①·실칙§17①·디칙§28·상칙§36·출원규정§4④)

○ 기타 첨부서류

특허청장은 외국인이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있어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의 당사국 또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특칙§8②·실칙§17①·디칙§28·상칙§36)

3. 출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3.1. 출원서류의 접수

(1) 서면제출서류에 대한 기초방식

고객서비스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이하 “출원등록서비스과”라 한다)는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출원인에게 전자화 부적합 항목의 즉시 정정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원규정§4①)

☞ 3.3. 『접수서류의 기초방식』

☞ 3.4. 『전자화대상 서류의 처리』

(2) 서면제출서류의 접수절차(출원규정§ 4, § 5, § 7)

고객서비스과, 출원등록서비스과는 출원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는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한 후, 접수일자·제출인의 성명·진명·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교부하고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출원규정§4②)

☞ 3.1. 『출원관련 서류의 접수』

(3) 전자적기록매체의 접수절차(출원규정§ 6)

- ①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한다.
- ② 전자적기록매체 및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에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 ③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다.

(4) 우편에 의한 접수절차(출원규정§ 8)

- ① 운영지원과 및 서울사무소 관리과(이하 “관리과”라 한다)는 우편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봉투와 서류에(여러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각 서류마다)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접수일자·제출인 성명 또는 명칭 및 건명 등을 기재한 후 해당과에 이첩한다.
- ② 운영지원과 및 관리과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에(전자적기록매체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적기록매체라벨 위) 그 우편물의 우체국 소인 일부인의 날짜를 표기(여러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각 서류마다 표기하고 봉투가 첨부되지 않은 각 서류마다 당해 봉투가 첨부된 서류의 근거를 표시)하여 합철하고, 출원료 등 수수료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일부인의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명”이라고 기재한다.
- ③ 일·숙직원은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후에 우편물로 도달한 서류를 접수하여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근무일 익일 운영지원과 및 관리과에 인계하고, 운영지원과 및 관리과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3.1. 『출원관련 서류의 접수』

(5) 출원번호의 통지

- ① 특허청장은 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일별로 출원번호를 부여하며, 그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특칙§24·실칙§17①·디칙§28·상칙§36·출원규정§11)
- ② 출원번호는 역년일련번호로 부여한다.(출원규정§11)

3.2. 출원서류의 처리

- ① 고객서비스과 및 출원등록서비스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사무취급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전자화대상 서류 및 전자화대상 목록을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화기관에 이관한다.(출원규정§13②, §15①)
- ② 출원서비스과 및 출원등록서비스과는 전자화된 서류의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사무취급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출원서 및 중간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단, 전자적기록매체의 보관기관은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이 있는 후 6개월로 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전자적기록매체는 폐기할 수 있다.(출원규정§13③, §15②)

☞ 3.6. 『접수서류의 보관·관리』

3.3. 출원서류의 관리

(1) 출원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 ① 출원·심사·기술평가 및 특허이의신청서류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선행기술의 조사, 국제특허분류, 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특§217①·특§217의2)
- ② 또한, 출원·심사·기술평가 및 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심사결정·심결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 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특§217②)

(2) 비밀누설죄

- ①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출원중의 발명 등에 대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229)
- ② 전문조사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도 직무상 공개되지 않은 발명 등의 내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밀누설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특§229의2)

제2편 출원방식심사 일반



1. 출원방식심사

1.1. 의의

출원방식심사는 산업재산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인·대리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의 기재방식 및 첨부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 법적 근거

출원서류의 방식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 (1) 절차의 보정(특§46, 실§11, 디§17, 상§13)
- (2) 절차의 보완(상§9의2)
- (3) 제출서류의 반려(특칙§11, 실칙§17①, 디칙§2, 상칙§2)
- (4) 증명서류의 제출(특칙§8, 실칙§17①, 디칙§28, 상칙§36)

1.3. 담당 부서

출원 관련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는 출원서비스과에서 특허청장 명의로 이를 수행한다. 다만, 방식 위반 사항이 실체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방식심사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출원서비스과에서 절차상 흠결에 대한 방식심사를 누락한 경우 실체심사관이 방식심사를 수행한다.³⁾

3) 심사관에 의한 방식심사

가)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580호)

제18조(방식심사) ① 심사관은 심사진행중에 접수서류가 「특허법」 제4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에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가 적절하게 납부되지 않은 흠결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서비스과

2. 출원방식심사의 대상

출원방식심사의 대상은 관련법에 의하여 반려대상이 되는 사유와 절차의 보정대상이 되는 사유가 해당된다.

장·국제출원과장 또는 등록서비스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서류의 흠결이 출원서비스과장·국제출원과장 또는 등록서비스과장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대한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 ① 심사관은 심사진행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적법한 출원서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서비스과장·국제출원과장 또는 등록서비스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부적법한 서류가 출원서비스과장·국제출원과장 또는 등록서비스과장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처분할 수 있다.

나) **상표·디자인 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558호)

제16조(방식심사) ① 심사관은 실체심사 진행 중에 접수된 서류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1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방식심사결과 수수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사실을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무효처분) ① 심사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통지한 보정명령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그 출원에 관한 절차를 특허청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1) 출원의 주체에 관한 사항

출원의 주체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권리능력 또는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법인출원의 경우 법인격 유무⁴⁾
- 2)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 능력(특§4)

(2) 절차능력에 관한 사항

절차능력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 등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특§3)
- 2) 재외자의 특허관리인(특§5)
- 3) 무권대리 또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절차대리(특§6)
- 4) 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변경출원, 이중출원 등에 있어서 출원주체의 동일성(특§33 · §37 · §38 · §44 · §52 · §53 · §54 · §55)

(3) 법령에 정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개별조문 또는 기재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상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 사항 기재여부
 - “OOO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는 “OOO를 기재한”의 표현 등
- 2) 기본서류와 첨부서류의 관계
 - “OOO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는 “OOO를 첨부한”등의 표현

4) 특히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

- 기본서류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와의 일치여부
- 첨부서류(증명서)의 불비여부
- 3) 인장(서명)등의 의사표시 확인
 - 제출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등의 표현
- 4)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준수여부

※ 법령이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의 유형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에 적용해오고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미기재)
- 2)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오기재)
- 3) 필요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미첨부)
- 4) 첨부된 증명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오첨부)
- 5) 기재내용과 증명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불일치)
- 6) 서명 날인이 없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경우(미날인)

(4) 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수수료의 납부절차 및 납부액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3. 출원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로서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절차의 본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하자로 보정으로 서도 치유할 수 없는 사항은 반려(불수리)처분을 하며, 반려사항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다.

3.1. 제출서류의 반려

출원에 관한 서류 등을 방식심사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본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하자가 있고, 보정으로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17⑤⑥, 특칙§11·실칙§17①·디칙§2·상칙§2)

- (1) 제출서류의 반려사유로서 산업재산4권(특, 실, 디, 상)에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다건1통 대상서류 제외)
 -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 3)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 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재외자)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 6) 법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 7) 법령이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8)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9)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 10) 당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 11)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포괄위임등록철회서·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서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12)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된 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 13) 특허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⁵⁾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4)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⁶⁾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부적법한 특허출원서의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다.(특칙§11①)

- 1) 출원서에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첨부하였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2)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 경과된 경우
- 3)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 4)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5)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변경·이중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 6) 특허법 제210조 제1항, 제204조 제1항 또는 제2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
- 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 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3) 부적법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다.(실칙§17①에서 준용하는 특칙§11①)

- 1) 출원서에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첨부하였더라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2)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기타 반려사유는 특허출원서의 반려사유와 동일
- (4) 부적법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다.(디칙§2)
- 1)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5) 부적법한 상표등록출원서의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다.(상칙§2)
-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제출이후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전에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 3)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이 상표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4) 상표법 제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 5) 상표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을 한 경우
- (6)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등에 대하여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한다.(특칙 §11②·실칙§17①·디칙§2②·상칙§2②)

(7) 반려이유안내에 대한 소명서 등

- 1) 반려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서(특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 등을 소명기간 이내에 반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특칙 별지 제8호서식)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11③·실칙§17①·디칙§2③·상칙§2④)
- 2) 소명서는 반려이유에 대한 설명 또는 증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소명서 자체로서 반려이유통지의 대상이 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특허청장은 출원인 등으로부터 반려요청을 받은 때,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한다.(특칙§11④·실칙§17①·디칙§2④·상칙§2⑤)

3.2. 절차의 보정명령

(1) 보정명령의 의의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방식심사한 결과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인에게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여 절차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특§46조, 실§11, 디§17, 상§13)

(2) 보정명령의 대상 또는 사유

- 1) 절차능력에 관한 사항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대리권의 범위
- 2) 법령에서 정한 방식의 적합여부
- 3) 수수료의 납부여부에 관한 사항

(3) 보정명령의 내용

절차의 보정요구시에는 근거규정 및 보정할 사항을 명시하고 보정기간을 정하여 통지한다. 출원서류의 보정할 사항은 특허법 제46조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상의 요건에 위반되어 절차상의 요건에 맞게 보정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보정기간

- ① 보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특칙§16·출원규정§12)
- ② 보정기간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월(재외자의 경우도 같다)이다.

(5) 보정의 효과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 경우에는 최초 출원서류를 제출한 날로 소급하여 출원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3.3. 절차의 보완명령

(1) 절차보완의 의의

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출원일의 인정”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당해 출원을 반려하지 않고 보완요구를 통지하여 출원인 등으로 하여금 하자가 있는 서류만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보완을 명한다.(상§9의2②)

(2) 절차보완명령의 대상 또는 사유

- 1) 상표등록을 받자고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3) 상표등록출원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절차보완명령의 내용

절차의 보완요구시에는 보완요구의 근거규정 및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완기간을 정하여 통지한다.(상§9의2②)

(4) 절차보완기간

절차보완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20⑦)

(5) 절차보완의 효과

- ① 절차의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적법한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최초 하자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일자가 아닌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일자를 출원일로 인정한다.(상§9의2④)
- ②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반려할 수 있다.(상§9의2⑤)

3.4. 서류의 제출명령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특칙§8①)
 - 1) 국적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그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인감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중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서류

☞ 3.2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2. 외국인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파리조약의 당사국 또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호혜주의 확인국)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특칙§8②)
 - 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2) 산업재산권의 권리능력에 관한 호혜주의 확인서
3.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과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특칙§8③)

4. 서류제출명령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한다.(특칙 §11① 14호)

3.5. 절차의 무효

(1) 무효처분 통지

- ①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지정기간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가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그 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특§16 ① · 실§3 · 디§4 · 상§5)
- ② 무효처분시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류의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부기한다.

(2) 무효처분의 효과

무효처분의 대상이 되는 서류 또는 효력의 범위는 「그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절차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⁷⁾

7) <행정심판 재결례>

특허출원서에 특허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허법 제3조에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특허에 관한 절차”로 약칭하므로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심사청구는 각각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되하며, 통상적으로 하나의 문서를 통하여 여러 절차를 동시에 밟더라도 각 절차의 효과는 개별 절차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출원심사청구가 무효라 하여 곧바로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초 특허관련 제출서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7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행정심판 04-11995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 1) 출원서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서의 전체가 절차 무효로 된다.
- 2) 다만, 출원과 동시에 출원서에 기재한 청구·신청(심사청구, 우선권주장, 디자인비밀보장청구,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출원인대표자선임, 지분약정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해당 청구·신청 등에 대해서만 보정요구를 하고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절차만을 무효처분한다.
- 3) 보정서 등 중간서류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절차만이 무효로 된다.
 - ① 무효로 된 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선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특§36④·실§7④·디§16④·상§8③) 무효로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특§55①·실§11)
 - ② 출원공개 후 출원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제2항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65⑥·실§15·디§23의3⑥)

3.6. 무효처분의 취소

1. 특허청장은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요구를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요구를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⁸⁾.

8) 무효처분 취소에 대한 판례
구특허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 동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16②·실§3·디§4·상§5)

2. 「보정요구를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됨은 물론이며, 심사실무에서 무효처분의 서류를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나, 공시송달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절차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무효처분을 취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경과구제신청서(특칙 별지 제10호서식)에 기간경과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17·실칙§17①·디칙§28·상칙§36)
4. 무효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무효처분취소통지서에 무효처분을 취소한 때부터 당초 보정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보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병기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무효처분 후 무효처분취소 전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 또는 심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무효처분의 취소여부에 따른 영향과 신뢰 보호원칙 등을 고려하여 그 절차 및 심사결과의 효력 여부를 인정한다.

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특허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장이 그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고, 특허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등록된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264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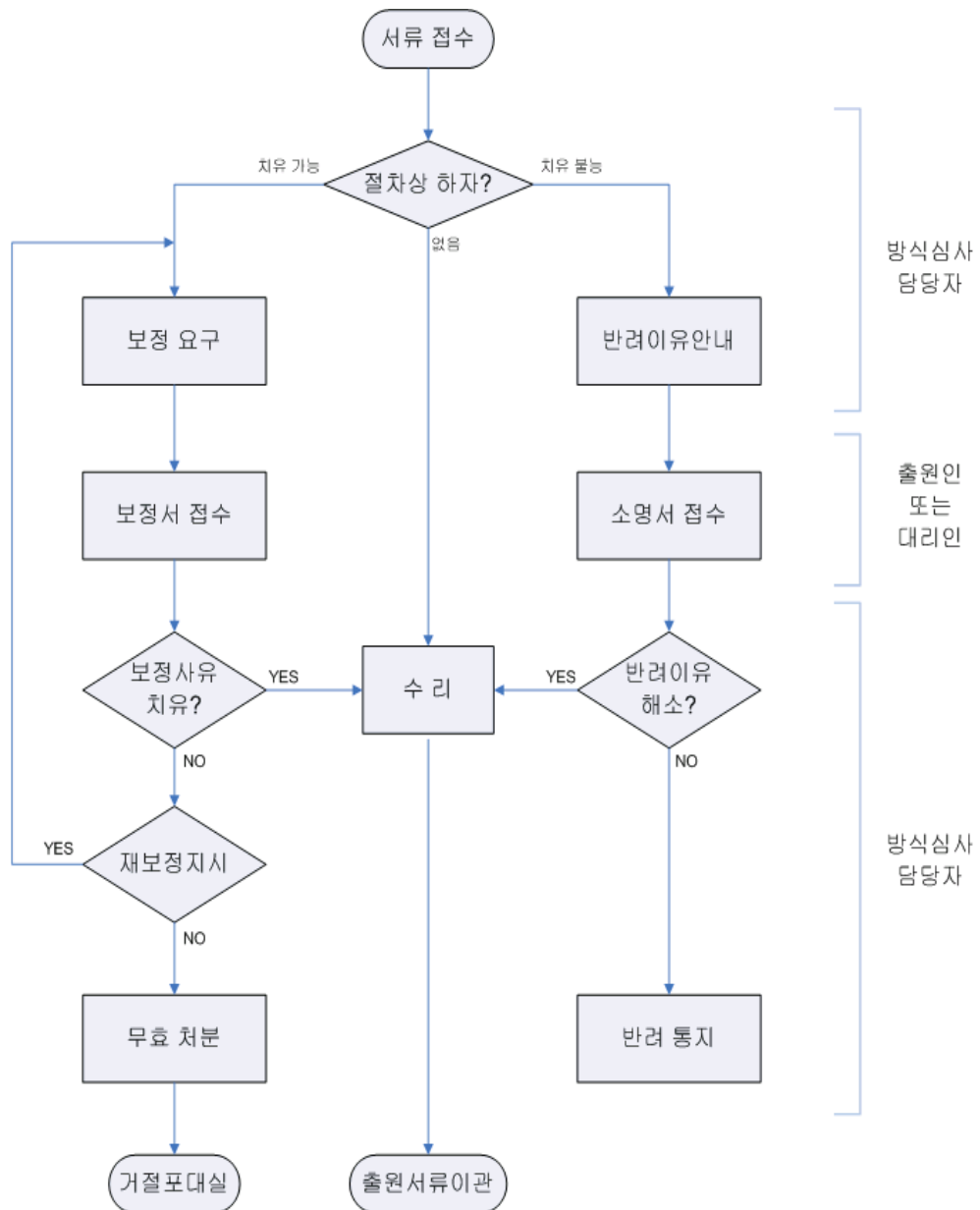
3.7. 방식심사결과 결함유형별 처리 예시

1. 방식심사 결과 결함의 유무 또는 사유에 따라 출원관련 서류의 반려(특칙§11·실칙§17①·디칙§2·상칙§2), 절차의 보정명령(특§46조·실§11·디§17·상§13), 절차의 보완명령(상§9의2), 증명서류의 제출(특칙§8·실칙§17①·디칙§28·상칙§36)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기재사항의 결함 유형별 처리

기재사항	반려대상 (보완대상)	보정·직권정정대상
출원인 성명, 주소	미기재	오기재
대리인(법정대리인)		미기재, 오기재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미기재, 오기재	기타사항
제출원인 번호, 일자		미기재, 오기재
보정할 사항	미기재,	오기재
명세서	누락, 미기재	
증명(첨부)서류		미제출
출원인 변경	양도인 또는 양수인 미기재	오기재
출원취하·포기서	취하·포기대상 서류명 미기재	접수번호 미기재, 오기재 등록인감과 다른 인감사용
변경, 분할, 이중출원의 원출원의 표시	미기재	오기재
상품분류전환신청서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	미기재	
상표등록출원서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	(미기재)	
변경서류	변경사항 미기재	변경전사항 미기재, 오기재
출원인코드		미기재, 오기재
기간연장의 표시		미기재, 오기재
우선권주장		오기재
수수료		미납, 과오납

※ 방식심사 절차도



제3편 출원방식심사 기준





1. 출 원 인

1.1.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1. 발명(고안, 창작)은 사실행위로서 발명자(고안자,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은 출원인은 될 수 있으나 발명자(고안자, 창작자)는 될 수 없다.
또한 발명(고안, 창작)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이므로 행위 무능력자도 발명자(고안자, 창작자)가 될 수 있다.
2. 발명(고안, 창작)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완성한 경우, 특허(실용, 디자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특 §33 · 실§11 · 디§3)
3. 발명자(고안자, 창작자)는 해당 발명(고안, 창작)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로서, 단순한 보조자 · 조언자 · 자금제공자는 발명자(고안자, 창작자)가 될 수 없다.

1.2.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1. 발명·고안·창작을 한 자(특§33·실§11·디§3) 및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상§3)
2. 발명·고안·창작을 한 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상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거나 승계한 자(특§37·특§38·실§11·디§23의4·디§24·상§12)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자(특§38⑤)
 - 1)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인(민§1000 이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특칙§7①)
 - 2)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받을 권리를 출원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1013). 그러나 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된 때에는 이 서면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증에 의하여 승계한 자(특§38⑤)

이 때에는 유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특칙§7①). 원본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1.3.



권리능력 일반

1. 권리능력(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산업재산권법상 절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다만, 권리능력을 갖지 아니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 심판 및 재심의 청구·피청구 등 일정한 절차에 한하여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특§4·실§3·디§4·상§5)

2. 권리능력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산권법상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특허법에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만 규정하고(특§25), 내국인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⁹⁾

3. 산업재산권법상 권리능력의 주체는 일반적인 재산권법상의 권리의 주체와 동일하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에 한정된다.

9)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능력을 원칙적으로 민법 등 실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인데, 그 의미는 실체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특허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동일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1.4.



권리능력 유무의 판단

1. 권리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산업재산권법상의 행위도 일반의 재산권법상의 행위와 동일하게 재산권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2. 권리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이를 심사관의 실체적 심사에 맡겨야 한다는 판례¹⁰⁾도 있으나, 방식심사 단계에서도 권리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절차를 밟는 자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3. 출원인은 사전에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제출시에 출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출원시 출원인코드와 성명(명칭)만을 기재하므로 출원인 적격문제는 출원인 코드부여(출원인 등록)단계에서 철저히 점검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출원

10) 권리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

舊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제11호 소정의 '서류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서류의 기재사항에 결격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서류가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특허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능력을 가지는지 또는 출원인이 동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여부등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가 그 같은 실질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불수리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를 수리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 80누 414)

인코드부여신청서에 법인등록번호의 기재없이 법인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에 대한 증명서의 제출이 없으면 이를 반려한다.

4. 권리능력의 유무판단은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최초의 절차 즉,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및 출원시 뿐만 아니라 출원절차의 진행중에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출원인변경의 경우)에도 양수인이 권리능력을 가진 자인지를 판단한다.

1.5.



절차능력 일반

1. 산업재산권법상 절차능력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2. 산업재산권법상 행위능력에 관하여 특허법에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재외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3), 내국인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행위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3.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특§3①)
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재외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산업재산권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특§5①)

1.6.



복수당사자의 대표 등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공동출원 등)로서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특§11①·실§3·디§4·상§5)
 - 1) 출원의 변경·포기·취하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 2) 신청의 취하·특허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 2) 청구의 취하
 - 4) 특허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2. 따라서,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절차행위의 결과가 전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의견서의 제출, 제출서류의 보정 등의 절차는 공동당사자중 1인이 할 수 있고 그 행위는 전원에게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3.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로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한 때에는 신고된 대표자 홀로 당해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신고된 대표자는 상기 1의 단서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대표자선정신고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위임사항을 특기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본다.

1.7.



내국인의 권리능력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불문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이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2.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의 실종자도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판결¹¹⁾이 있다.
3.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지 않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재외자이므로 특허출원을 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특§5·실§3·디§4·상§5)

☞ 2.9. 재외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

11) 대법원 91다 2455판결

1.8.



외국인의 권리능력

□ 조약국(상호주의 확인국) 국민의 권리능력

1. 외국인으로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은 권리능력이 인정된다¹²⁾.
2. 국제조약으로는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가진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WTO/TRIPS)” 등이 해당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상표법조약¹³⁾이 여기에 해당한다.
3. 국제조약 미가입국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해당국가간 조약 또는 기타 상호주의 확인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키로 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호주의 확인증명서는 한 가지 사건에 관해 그 취지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동일국에 대하여는 증명서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다.

12)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판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그 예외로서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또 그 외국인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그 나라 안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그 외국인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이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1976. 4. 27선고, 74후61 판결)

13) Trademark Law Treaty

4. 조약가입국 또는 상호주의확인국 해당여부는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비조약국 국민의 권리능력

1. 비조약국 또는 상호주의 미확인국 국민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을 향유할 수 있다.

-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2) 조약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3) 상호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비조약국 국민의 출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내(조약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경우

- 1) 특허법 제25조 본문에서는 “재외자 중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권리능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있다.
- 2)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재내자)는 국적의 유무 또는 그가 속한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 3) “주소”의 해석과 관련하여, 거소는 생활의 근거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데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한 거주가 있는 경우, 즉 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파리협약 제3조(a) 해석)

4) 외국인에는 자연인은 물론 외국에서 인가된 법인도 포함하며, 영업소는 반드시 주된 영업소(본점)일 필요는 없고 지점, 공장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파리협약 제3조(a) 해석)

3. 조약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

비조약국 국민으로 조약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내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서 해당국의 국민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1.9.



무국적자의 권리능력

1.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 및 파리조약 동맹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중의 한나라의 영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산업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2. 무국적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토록 한다.(특칙§8·출원규정§4④)
 - 1) 대한민국이나 파리조약 당사국 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거소 포함) 또는 영업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2) 국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국적이 없음을 본인이 자술한 선서로도 가능)

1.10.



법인의 권리능력

1. 법인은 일정한 단체가 구성원과는 독립되어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인격을 갖는다.
2. 그러나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예 : 대표이사)을 설정하고 그 기관의 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허법에서도 법인의 권리능력은 민법에서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 법인 등기부상의 법인명칭 표시

- 상법법인의 경우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민법법인의 경우 : 재단법인, 사단법인
- 특수법인의 경우(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학교법인 ○○○○, 법무법인 ○○○○, 특허법인 ○○○○, 영농조합법인 ○○○○ 등

1.11.



국가의 권리능력

1. 국가는 출원인이 될 수 있다.
2.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인 경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승계한다.(발명진흥법 §10②)
3.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국가명의로 특허출원하여야 한다.(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7).

※ 출원서의 출원인명칭 표기;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4.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①)이 승계한다.(발명진흥법 §10②)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담조직의 법인명으로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 출원하여야 한다.

1.12.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지방자치법 제2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있으며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에 한정한다.¹⁴⁾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표시방법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 서울특별시 ○○구, ○○광역시 ○○구
- 시·군의 경우 : ○○시, ○○군
- 시립대학의 경우 : 「○○특별(광역)시(○○대학총장)」

14) 지방자치단체의 “구(區)”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區(자치구라 함)에 한정되므로 자치구가 아닌 “市”의 “區”(예 : 수원시 권선구)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13.



법인이 아닌 단체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을 때¹⁵⁾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특§4·실§3·디§4·상§5)

- 1) 출원심사청구
- 2) 특허이의신청(구.특§4)
- 3)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구.실§4)
- 4) 심판의 청구 및 피청구
- 5) 재심의 청구 및 피청구

15)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등을 하지 않아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단체를 “법인격없는 단체”(이하 “비법인단체”라고 한다)라고 하는 바, 종친회·동창회·교회·학회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비법인단체는 권리능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출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등에서는 비법인단체의 경우에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를 소위 형식적 당사자능력이라 한다(☞민소§48).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기한 사회구조 속에서 비법인단체의 절차상 주체성까지 부인한다면, 그 단체를 상대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단체의 구성원 전원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절차적 불편과 번잡이 따르게 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단체측으로서도 단체의 이름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실체법과는 입장을 달리하여 형식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특허법에서도 심사청구 등 특정절차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1.14.



법인격 없는 단체명칭으로 출원한 경우의 취급

1. 법인격 없는 사업체 또는 단체가 사업체명(상호) 또는 단체명으로 출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¹⁶⁾
2.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출원서상에 사업체명(상호)와 대표자 성명이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의 명칭을 대표자 개인의 성명으로 경정토록 안내하고, 이미 출원인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 절차를 밟도록 안내한다.¹⁷⁾
3. 법인격 없는 사업체 또는 단체가 사업체명(상호) 또는 단체명으로 출원한 경우, 당해 사업체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성명이 출원인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출원인이 개인명의로 출원으로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당해 출원서를 반려한다.

16)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출원의 당사자(출원인적격)가 될 수 없다. 출원인코드부여 담당 공무원은 법인의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시 정확한 법인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격의 존부가 불분명한 사업체나 단체명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법인증명서등을 제출토록 하여 법인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특칙§8①)

17) 출원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의 출원임을 밝히고, 대표자 개인의 출원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함이 출원인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상호 등으로 거래하는 것이 통례이고, 이 경우 권리의무의 주체는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것이므로 당해 상호 등의 명의로 출원(제출)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로 기재된 개인사업자 자신으로 정정 또는 보완하는 것은 출원인 주체의 변경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취급한다.

1.15.



청산중인 회사의 권리능력

청산중인 회사도 출원인적격을 갖는다.

설 명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된다(상법§245). 따라서, 채무변제·재산환가처분 등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소극적인 권리능력은 회사의 법인격과 함께 청산중에도 존속한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청산종료까지 수년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산중인 회사의 출원인 적격을 인정하여 그 재산환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산중인 회사의 출원인 적격은 인정되는 것이다.

1.16.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28의2 ①)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특§28의2 ③)
3.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28의2 ④)
4. 고유번호 부여 규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특§28의2 ⑤)
5.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특칙 별지 제4호서식)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칙§9 ②)

1.17.



출원서 등의 출원인 인적사항 등 기재방법

1. 출원인 인적사항의 기재방법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특허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출원인코드(12단위)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한다.

※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의 본점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려한다.(특칙§11)

2.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및 출원서의 국내 주소(거소) 기재방법

- 1) 국내의 주소는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에 표시된 대로, 『특별(광역시)·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읍·면·동·리, 번지, 호수』를 완전하게 기재한다.
- 2) 과거에 사용되던 지명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이 상이한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과거 지명이나 행정동을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괄호내에 기재한다.
- 3) 법인의 주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본사)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동·리명, 번지, 호수에 해당하는 숫자·기호 등은 필요에 따라 『연결부호』 또는 『의』 등의 문자로써 연결할 수 있다.

3.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및 출원서의 외국 주소 기재방법

- 1) 외국의 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국내주소 기재와 같이 국명, 행정구역(주·시·도, 시·군·구에 해당), 동·리명, 번지, 호수의 순으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기재한다. 다만, 국명 및 행정구역 단위(주·시 및 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의 외래어 표기에 관하여는 번역어의 기재를 인정하고, 또 명백하게 기호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는 외국문자의 기재를 인정한다.
- 2) 동·리명에 해당하는 원어(예를 들면 South를 남, Street를 가, P.O.BOX를 사서함으로 번역하는 것)를 번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서수·기수를 표시하는 단어(예를 들면 bis, 2nd)는 기호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외국의 주소중에서 번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의 마지막에 “(번지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예) 외국주소

주 소 :	17301 Ridgeland Avenue, Tinkley Park, Illinois 60477, U.S.A
적절한 기재 :	미국 일리노이주 60477, 틴클리파크 리지랜드 애비뉴 17301
잘못된 기재 :	17301 리지랜드 애비뉴 틴클리파크 일리노이 60477 미국

4.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등에 주소로 기재된 국가와 출원인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한다.(특칙§8) 다만, 주소에 기재된 국가와 국적이 상이하더라도 주소에 기재된 국가와 국적 모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의 당사국 또는 상호협정국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18.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 국내회사는 상호내에 회사의 종류¹⁸⁾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법인명칭에 회사종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제출을 명한다.(상법§19·§20)
2.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해당국 주무관청의 증명서 또는 공증인에 의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한다.
 - 1) 상기 서면에는 당해 회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증명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 2) 공증인에 의한 증명서는 당해 회사가 법인인 사실을 공증인 자신의 책임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회사의 대표자 등이 선서하여 공술한 증명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8)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

1.19.



외국어로 된 증명서 등에 있어서의 법인명칭 기재

1. 외국어로 기재된 양도증·위임장 등의 증명서류에 기재된 법인명칭은 한글명칭의 표준발음에 따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2. 법인이 영문명칭을 정하고 있고, 그 동일성을 정관 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영문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인정한다.

1.20.



서류간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1.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원인 관련사항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각종 서류간에 있어서 출원인 등의 관련사항이 상이한 경우에 그것이 외국어를 읽는 방법(예: 독일어를 영어발음으로 읽는 경우 등)에 기인하는 발음의 기재만의 상이로서 주체의 상이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때는 보정을 명하지 않고 수리한다.
3. 각종 서류간에 있어서 출원인의 성명·명칭·주소 등의 기재사항이 문장부호(쉼표, 마침표, : 등) 및 연결부호(-, /)등의 차이에 기인하여 상이하게된 때에는 보정을 명하지 않고 수리한다. 다만, 숫자에 대하여는 본 취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1.



출원인(대리인)의 인장

1.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사항 및 대리인성명 다음에 대리인 인장(대리인코드부여신청시 특허청에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출원인의 인장은 날인하지 않는다.
2. 공동출원에 있어 대표자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이외의 인장은 날인하지 않는다. 단, 공동출원으로서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출원인 전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으로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특허청에 등록된 인장과 제출서류에 날인된 인장이 상이할 경우
 - 1) 특허법 제6조에 정한 특별 수권사항(출원의 변경, 취하, 포기 등)인 경우에는 접수창구에서 반려하여 등록된 인장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 2) 기타 절차에 관한 중간서류의 경우에는 등록인장과 상이하여도 다른 출원인 정보가 동일하면 수리한다.
4. 2008. 1. 1.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명만으로도 특허절차에 관한 민원서식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출원의 변경, 취하·포기 등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절차(특§11① 각호)에 대해서는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22.



출원·등록건의 일괄 정보변경 체계

1. 2007. 12. 31. 이전의 출원인 정보 및 등록명의인표시 변경
 - 1) 출원건은 출원인정보변경신청서가 수리되면 출원인코드의 정보가 변경되어 해당 출원인의 모든 출원건의 정보가 변경된다.
 - 2) 등록건은 별도의 등록명의인표시 변경신청서가 수리되면 기재한 등록번호에 해당되는 등록원부의 등록정보가 개별적으로 변경된다.

2. 2008. 1. 1. 이후 출원인코드정보변경에 의한 출원·등록건 변경
 - 1)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신고서」가 수리되면 출원인코드의 정보가 변경되어 해당 출원인의 모든 출원건의 정보가 변경된다.(특칙§9, 실칙§17, 디칙§28, 상칙§36)
 - 2) 동시에, '08. 1. 1 이후에 등록된 해당 출원인코드의 등록건 등록원부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변경된다.
 - * '07. 12. 31이전 등록건은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 제출

3.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 의한 통합 관리 ('07.12.31 이전 건)
 - 1)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에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권리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등록원부에 반영하고, 신청인에게 통합관리승인서를 발송한다.
 - 2) 이후부터는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절차만 이행하면 해당원부가 변경된다.
 - * 단, 통합관리 신청서에 적시한 등록권리에 한해 통합관리됨(특허등록명시행규칙§10)

1.23.



출원인 정보(성명, 주소, 인감 등)의 변경 또는 경정신고

1.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의 소재지)·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9③·실칙§17①·디칙§28·상칙§36)
 -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의 제시로써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통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위 신고사실을 주민등록증의 제시로써 증명하는 경우에 그 확인자는 신고서 우측상단의 “주민등록증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별지§4의2)
3.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인감을 변경한 때 또는 발명자의 성명·명칭·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별지 제55의2 서식 또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81)
 -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출원인코드 정정신고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정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9④·실칙§17①·디칙§28·상칙§36)

-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24.



출원인 성명(명칭) 경정에 관한 절차

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중 출원인 성명(명칭)의 경정은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한다. 출원인의 변경·추가·삭제는 출원주체의 변경이 되므로 그에 대한 경정신고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출원인변경신고 절차를 밟도록 한다.
2. 출원인 사항을 오기한 경우, 당해 오기의 발생원인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하는 취지 및 경정 이후에도 출원주체 변경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신고를 통한 경정을 인정한다.
3. 출원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경우로서 출원주체 변경의 우려가 없는 때(예; 주식회사를 조식회사로 오기한 경우 등)에는 출원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면 경정을 인정한다.
4.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중대한 착오나 과실로 출원인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경우로서 명칭 경정의 한계를 벗어나 출원주체 변경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성명(명칭)경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우선권증명서류(자국출원서)의 출원인 주소, 발명의 명칭 및 기술적 내용이 동일하여 출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주식회사 “갑”을 주식회사 “을”로 기재하여 출원하였다면 주식회사 갑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외견상 출원주체의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민법상의 착오이론¹⁹⁾과 같이 중대한 착오로 인한 잘못은 정정할 수 없다고 해석됨) 이의 경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1.25.



출원인 정보변경(경정)시 신고사실 증명서류의 유형

1. 내국 자연인의 경우
 - 1) 가족관계증명서
 - 2) 주민등록등(초)본
 - 3) 인감증명서
 - 4) 기타 증명서류
2. 내국법인의 경우
 - 1) 법인등기부등(초)본
 - 2) 기타 증명서류
3. 외국 자연인의 경우
 - 1) 국적증명서
 - 2) 우선권주장서류
 - 3) 기타 증명서류
4. 외국법인의 경우
 - 1) 법인국적증명서
 - 2) 법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초)본
 - 3) 우선권증명서류
 - 4) 기타 증명서류

19) 민법§109① 단서규정



2. 대 리 인

2.1.



대 리 인

1. 특허법상 대리제도에서 대리인은 크게 구별하여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다.
2.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3.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 임의대리인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 이외에 특허관리인(특§5) 및 지정대리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5)이 있다.
4. 특허법상 대리제도는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대리제도에서 유래하고 있으나, 특허에 관한 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의 대리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허법상 대리제도에 관한 규정은 제3조의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제도, 제5조 내지 제10조의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증명, 대리권의 불소멸, 개별대리, 대리인의 개입 및 제12조의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이 있다.

2.2.



출원의 대리할 수 있는 자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하는 사항의 대리는 업으로 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나,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변리사에 한한다.(변리사법§2, §22)
2.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하며(변리사법§7),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행한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변리사법§25)

판례

변리사법 제7조에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 규정은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그 후 또 다시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변리사 L씨가 종전에 (갑)의 A상표에 대하여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자신의 A상표와 (을)의 B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L씨가 (을)의 대리인이 되어 행하는 대리행위를 가리켜 변리사법 제7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후 51 판결)

2.3.



대리인의 개별대리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특§9·실§3·디§4·상§5)

2.4.



특 허 법 인

1. 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변리사법 제6조의6)
 - ①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법인을 대표한다.
 - ③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특허법인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변리사법 제6조의7)
 - ① 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 ②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 또는 소속변리사이었던 자는 당해 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법인이 수임 또는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2.5.



미성년자 등의 절차대리인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하 “미성년자 등”이라 한다)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절차를 밟을 수 없다.(특§3)²⁰⁾
2.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즉,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는 복임권이 포함된다.
3.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성년자 등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임의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없다.
5.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대리권을 상실한 때에는 절차는 중단된다(특§20). 법정대리권의 소멸이유로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후견인의 사퇴·해임(민§127, §939, §940)등이 있다.

20) 특허법 제3조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민§5)에 대하여, 준소송절차인 특허절차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취지에서 민사소송법 제51조를 따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자로 하여금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등의 권리 보호에 충실한 것이 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등을 대리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자로 하여금 절차를 밟게 하는 것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스스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임의대리인을 선임하여 선임된 그 자에게 절차를 밟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2.6.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본인과 신분적인 관계가 깊어 이들이 거래관계에서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행위를 할 우려가 적기 때문에 대리권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여 주고 있다.
2.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특허이의신청이나 심판 또는 재심 등은 소송행위에 준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민§921, §950)
3. 그러나 특허법 제3조제2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특허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정대리인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수동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7.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1.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921)
2.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인은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088호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출원방식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는 미성년자의 출원에 대한 권리가 친권자인 부에게로 양도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과 모가 양도 절차를 수행한다.(특별대리인과 모의 인감증명서, 양도증, 특별대리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²¹⁾

21)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088호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8.



임의대리인과 특별수권

1. 통상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출원의 변경·포기·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특허권의 포기, 특허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특허법 제132조의 3·제1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특§6·실§3·디§4·상§5).
2. 선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내우선권 주장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며 특별수권의 표시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선출원을 특정하여야 한다.(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외)
3. 대리인이 국내우선권 주장의 특별수권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특허법 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의 보정을 명한다. 그 보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특허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선권 주장의 절차를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한다.

- 예 시 -

구 분	선출원의 위임장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의 위임장
선출원시 우선권 주장에 대하여 특별수권하는 경우	본원 ○○출원에 관한 일체의 건 (우선권주장에 관한 특별수권) 이 ○○출원에 의거한 특허법 제55조 제 1항 또는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 11조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의 취하	본원 ○○출원에 관한 일체의 건 ※특별수권의 기재 불필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시 우선권 주장에 대하여 특별수권하는 경우	본원 ○○출원에 관한 일체의 건 ※ 우선권주장에 관한 특별수권의 기재가 없음	본원 ○○출원에 관한 일체의 건 (우선권주장에 관한 특별수권) ○○년 ○○출원 제○○○○호 (선출원 표시)에 의거한 특허법 제55조 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우선권주 장 또는 그의 취하

2.9.



재외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

1.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특§5·실§3·디§4·상§5)
2. 특허관리인은 통상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과 달리 수여된 범위 안에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수권 없이도 출원 취하 또는 심판청구 취하 등의 불이익행위를 할 수 있다.
3. 종전에는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은 수여된 권한 이외에 일체의 절차 및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도 대리권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재외자가 특히 수여하지 아니한 권한에 대하여도 대리할 수 있었으나, 2001.2.3.(2001.7.2. 시행) 특허법 개정에서 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외자의 특허관리인도 통상의 임의대리인에 준하여 수여된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2.10.



특허관리인이 없는 경우

1. 재외자의 대리인 전원의 사망·해임 및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재외자의 대리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대리인 선임절차를 밟도록 연락한다.

※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처분을 한다. 이 경우 특허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보정으로 흠결을 해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상기의 경우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직접 본인(그 재외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특§220②). 이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상기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특§220③)는 취지
 - 2) 종전의 대리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
 - 3) 이후의 절차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주의서(외국어로 번역한 서면을 포함)

2.11.



대리인의 선임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출원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지만,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특§5·실§3·디§4·상§5)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 포함)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특§7)
 -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5①)
 -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출원인변경신고·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시에 출원서·출원인변경신고서·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칙§5②)
 -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5③)
 -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해임 또는 변경하려

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임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특칙§5③)

3. 동시에 여러 건의 출원을 대리할 때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만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출원에 대하여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특칙§10①)
4. 이미 다른 출원에 제출된 위임장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위임장에 갈음할 수 있다.(특칙§10②)

☞ 3.22 『증명서류의 원용』

5. 통상의 대리인 및 복대리인의 선임·변경, 대리권 및 복대리권의 수여·소멸 또는 그 내용의 변경에는 그 사실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특허청에 대항할 수 없다.(특칙§5)

2.1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1. 위임장에는 대리할 사건의 표시, 수임자 및 위임자의 성명과 주소, 위임할 사항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특칙\$5①, 별지 1호서식)
2. 출원서 등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위임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한다.
3. 동일법 영역 내에서 하나의 위임장으로 다수의 건을 위임하는 것을 인정한다.
4. 위임할 사항에 “○○○에 관한 일체의 건”, “○○○에 관한 기타 일체의 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6조의 특별수권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는 특별수권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5. 출원인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첨부된 위임장의 위임사항에 “○○○에 관한 출원인 변경”, “○○○에 관한 출원인 변경에 관한 일체의 건”으로 기재되어 출원인변경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변경신고만의 위임으로 보아 처리한다.

2.13.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1.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授權)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특§7의2)
2. 무능력자나 무권대리인이 밟은 절차는 추후 적법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최초의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한다.
3. “보정된 당사자”란 예를 들어 최초 절차를 밟은 때에는 미성년자였으나, 이후 만 20세에 달하여 행위능력자로 된 자 등을 말한다.

2.14.



포 괄 위 임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이에 대하여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한다.(특칙\$5의2)
 - 1)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하는 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함으로써 위임장을 대신한다.(특칙\$5의2③)
 - ※ 출원·출원인변경신고·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시에 출원서·출원인변경신고서·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별도의 대리인선임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특칙\$5②)
 - 2) 포괄위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출원서 등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포괄위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위임을 하여야 한다.
2.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특칙\$5의3)
3.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철회서를 제출해야 한다.(특칙\$5의4)

2.15.



대리인의 중도수임

1. 출원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위임장(특칙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한 대리인에관한신고서(특칙 별지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특칙§5)
2. 의견서 등 중간서류에 위임장(출원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뜻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해 중간절차²²⁾에 한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당해 중간절차 이후 그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위임장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원용의 취지를 명기하고 위임장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특칙§10②)

22) 동시에 다른 중간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절차를 포함한다.

2.16.



복대리인의 선임

1.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여 대리인이 된 자이고, 그 권한도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사임도 자유롭지 아니하며, 본인의 승낙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법정대리인은 항상 복임권²³⁾을 가지며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122)
2. 임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제외한다)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특§6, 실§3)
3. 특허관리인은 수권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을 갖는 임의대리인의 일종이지만 그 선임자체가 법률규정(특§5)에 의해서 강제되며, 수여된 범위 안에서 복임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3) 복대리라 함은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다시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 한다.
복임권이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을 말하며 당연히 대리권의 일부는 아니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직접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별개의 권한이다(민§120).

2.17.



특허법인 설립에 따른 복대리인 선임신고 절차

1.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인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가 되어 당해 대리인이 대리하는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당해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특칙 별지 제2호서식)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5③)
2. 첨부서류
 - 1) 특허법인설립인가서 1통
 - 2) 복대리인 선임을 확인하는 서류²⁴⁾ 1통

24) 신고서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복대리인의 선임이 의뢰인의 위임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2.18.



복대리인의 권한

1.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수권에 의해 복대리인 선임권(복임권)을 가지는 경우, 당해 복임권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 취급한다.
2. 상기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복임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인이 복임권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복임권 부여의 입증은 일반적으로 위임장의 위임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입증서면으로 대부분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다.
3.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 및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123)
4. 복대리인은 복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소송대리인의 사망·사임에 의하여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19.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복임권

1.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복임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²⁵⁾
2.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및 복임권을 수여함과 동시에,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만 대리인의 복대리인이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5)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민법§120).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본인과의 신뢰 관계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에 따라 절차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본인의 신뢰에 입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법은 특별한 수권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의 선임을 인정하고 있다.(특§6)

결국,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은 그 선임 자체가 예외적인 사항이며, 그러한 복대리인이 또 다시 선임한 복복대리인은 본인과의 신뢰관계가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복임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본인이 복대리인의 복임권을 인정함을 명시한 경우에는 본인의 수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인정토록 한다.

2.20.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복대리인의 지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²⁶⁾. 다만, 본인은 복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26) 민법에서는 대리인의 사망으로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대리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감독할 가능성도 소멸한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민§127참조).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의 신속원활한 수행이라는 소송대리의 목적에 비추어 소송대리인이 사망하여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민소§96 참조).

특허절차는 준소송절차로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사망에 의하여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복대리인은 본인 및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민§123 ②) 복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위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본인은 복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21.



대리권 불소멸에 관한 규정의 해석

1. 대리권은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의 경우에도 소멸²⁷⁾하지 않는다.(특§8)
 - 1)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 4) 법정대리인의 사망 또는 능력의 상실
 -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
2. 따라서 당해 대리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합병후의 법인, 새로운 법정대리인 또는 위탁자나 새로운 수탁자(이하 “상속인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 해임 또는 변경, 대리권 변경이나 소멸의 신고서(별지 §2-2, 2-3, 2-4호 서식)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5)

27) 특허법 제8조의 취지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등으로 실체법상 소멸(민법§127·§128)함에도 불구하고 대 특허청관계 및 특허에 관한 절차에 대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위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위임에 의한 대리는 대리인의 전문적 지식 및 인적 신뢰위에 성립하고 위임 사무의 목적·범위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절차를 수행하게 하여도 상속인등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에 상속인 등으로부터 출원인변경신고, 새로운 위임에 의한 대리인 선임(변경)신고 또는 법정대리인 변경신고 등의 제출이 없는 한 당해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22.



공동출원인 중 일부의 자만이 대리인이 있는 경우

1. 절차를 밟는 자가 복수이고 그 중 일부의 자만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당해 선임된 대리인은 특허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복수당사자의 각자대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모든 자들과 공동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출원의 변경·포기·취하 또는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의 취하
 - 2) 신청의 취하, 국내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 3) 청구의 취하
 - 4) 거절결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2.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자가 위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출원인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대리인]란의 [주소]란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 ○○○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한다.

2.23.



특허청장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 개임명령

1.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²⁸⁾.(특§10①③ · 실§3 · 디§4 · 상§5)
2.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개임을 명할 수 있다.(특§10②③ · 실§3 · 디§4 · 상§5)
3. 특허청장은 상기 1의 대리인선임명령을 한 후 대리인선임 전에 상기 1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 대하여 한 절차 및 상기 2의 대리인 개임명령을 한 후 대리인 개임 전에 상기 2의 대리인이 특허청에 대하여 한 절차는 무효로 할 수 있다.(특§10④ · 실§3 · 디§4 · 상§5)

28) 특허법 제10조에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절차능력 때문에 행정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상 편의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절차를 수행하도록 대리인 선임 또는 개임을 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2.24.



실용신안기술평가에 관한 절차를 밝는 대리인

1. 특허에 관한 절차란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특허권 설정등록후의 절차를 포함한다.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실용신안권 등록후 기술평가와 관련한 절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출원서 제출시 기술평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이 위임을 받았다면 그 대리인은 기술평가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대리할 수 있다²⁹⁾.
2. 대리인이 포괄위임을 받은 경우, 포괄위임 사항에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기술평가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대리할 수 있다.

29) 심사지침서(특허·실용신안) 제1부 제3절 3.2 대리권의 범위



3. 출 원 서 류

3.1.



출원관련 서류의 접수

1. 고객센터서비스과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이하 “출원등록서비스과”라 한다) 접수담당자는 출원서 및 출원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점검하고, 전자화 대상서류에 대해서는 전자화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 직접 제출되는 서류
 - 1) 서류의 주요 기재사항과 전자화 대상서류의 전자화에 흠결이 없을 때
 - (가) 서류의 제1면 여백에 접수 barcode를 붙인다.
 - (나) 서류의 제출방법(방문), 제출인코드, 권리구분, 서류명, 건수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 (다) 접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접수증과 납입영수증 일체를 발부하여 교부한다.
 - 2) 서류의 주요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전자화 대상서류의 전자화 부적합 사유가 있을 때
 - (가) 제출자에게 정정하게 한 후 이를 접수한다.
 - (나)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상기 (나)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3. 송달되어 온 서류 등(고객서비스과에 한함)
 - 1) 운영지원과 또는 서울사무소로부터 송달되어 온 서류(일·숙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인수한다.

- 2) 서류의 주요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전자화 대상서류에 전자화 부적합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서류의 제1면 여백에 접수 barcode를 붙인다.
- 4) 서류의 제출방법(우편), 우체국 소인일자(또는 특허청 도달일자), 제출인코드, 권리구분, 서류명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 5) 접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접수증과 납입영수증(납부자보관용)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한다.

4.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당해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접수된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특§28의3③)

참고] 서류의 '접수'와 '수리'의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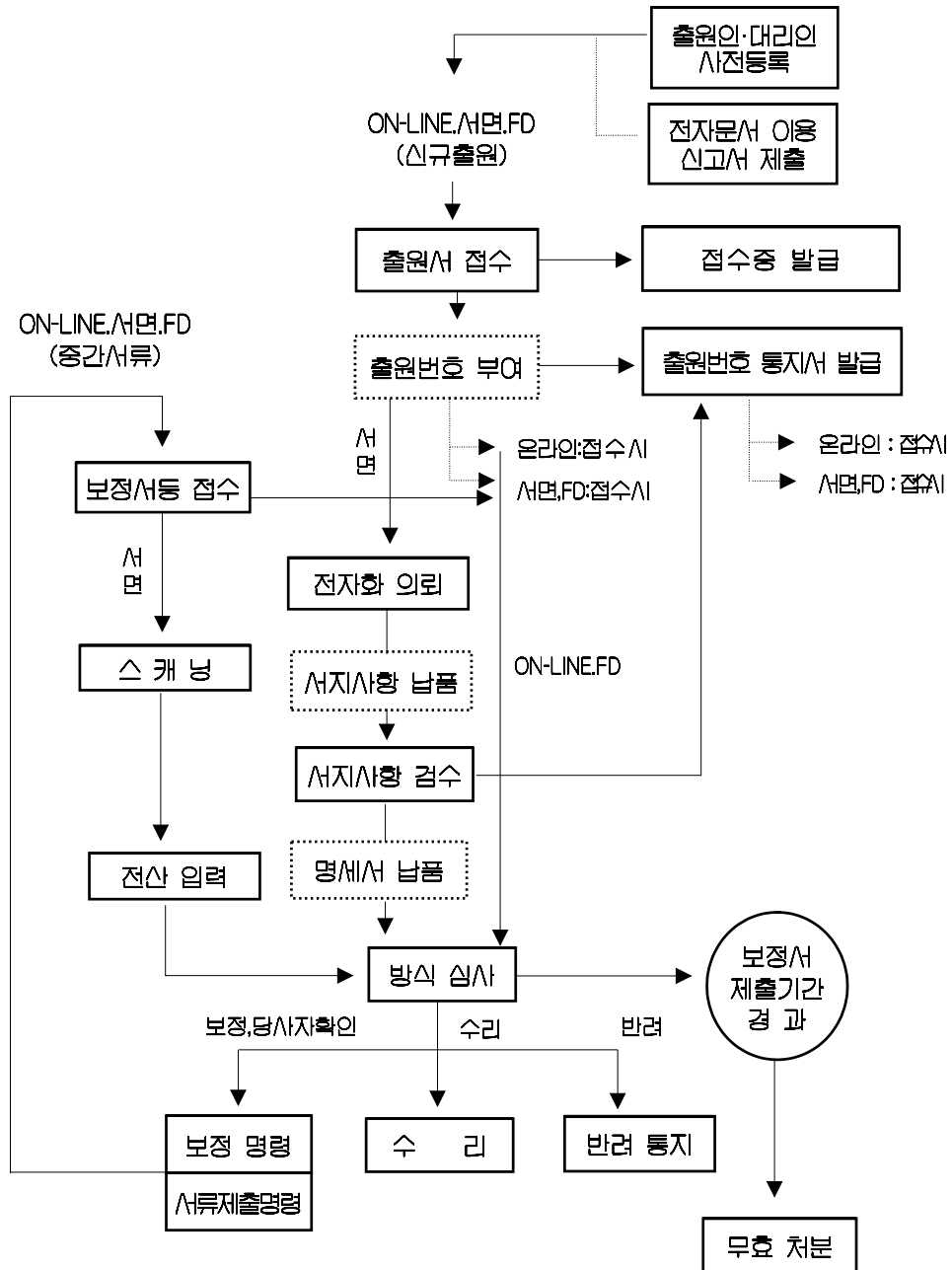
○ 접수

접수는 행정주체가 행한 행정상 공법행위이지만 권력적 단독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도달되어 출원일 확보가 추정되는 사실적 행정행위이므로 “수리”와 구분된다.

○ 수 리

수리란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수령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타인의 행위를 유효하다는 판단아래 받아들이는 인식표식 행위이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인 도달이나 접수와는 구별된다.

참고 출원서 및 중간서류 접수·처리 절차도



3.2.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의 효력발생 시기

1.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및 기타의 서류·물건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날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특§28②)
 -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 3)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이 불분명하고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
2.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PCT) 제 2조(vii)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특§28②단서)
3. 마드리드협약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은 우편으로 제출된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 출원일로 인정한다.

참고 전산에 의한 서류제출일의 관리방법

1. 전산에 의한 서류의 제출일자는 2가지 형태로 관리된다.
2. 먼저, 문서접수담당자가 법령에서 규정된 문서의 효력발생시기를 적용하여 문서의 제출일자로 입력하는 제출일자로서, 차후 출원일 등 서류의 제출일 결정의 기준이 된다.

3. 다음으로, 접수담당자가 실제로 문서를 전산에 입력하는 날짜로서, 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관리되며, 수수료 납부일의 계산기준³⁰⁾이 된다.

30) 서류제출인이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이를 제출서류에 동봉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서류를 접수처리한 후, 수수료를 은행에 대납하는 형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수료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8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제출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납부되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출서류가 전산입력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납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3.



접수서류의 기초방식

1. 고객센터서비스과 및 출원등록서비스과 접수담당자는 출원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한다.
2. 특히, 서류의 방식상 하자가 중대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반려대상이 되는 경우와 전자화대상서류로서 전자화 부적합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
3. 전자화 부적합사유 또는 항목은 주로 전자출원 S/W상의 문서작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재사항 또는 요소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제출원인, 사건의 표시(출원번호, 일자, 명칭 등) 기재
 - 2) 출원인 변경시 변경원인 및 양도·양수인의 출원인코드 기재 등
 - 3) 발명자의 성명(명칭)오류 : 발명자를 법인으로 기재
 - 4) 명세서 및 도면, 상표견본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등
4. 법령상 방식요건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5. 서류의 제출인이 정정지시를 거부하거나 정정지연·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서류를 접수토록 한다. 그러나 전자화부적합 사유가 있으면 3.4. 「전자화대상 서류의 처리」에 의한다.

3.4.



전자화대상 서류의 처리

1. 접수서류가 전자화대상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제54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고객센터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전자화대상서류가 누락됨이 없이 스캐닝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화대상서류 및 전자화 이관서류 목록을 전자화기관에 이관하고 전자화이관서류 목록을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12)
3. 고객센터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전자화과정에서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은 서류가 발견되어 전자화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6②)
4. 서류의 제출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화 부적합 항목에 대한 정정지시의 거부·지연·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명령 또는 반려통지를 할 수 있으며, 연락두절의 경우 공시송달을 한다.(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6③)

3.5.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특칙§9의2·실칙§17①·디칙§1의2·상칙§1의2)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별지 제7호서식)
2. 정정교부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3. 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의 사용어가 일어난 국제출원 관련서류
4.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별지 제69호서식, 2006.12.29. 삭제)
5.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별지 제59호서식)
6. 국방관련 출원서류(단, 비밀해제 통지이후는 가능)

3.6.



접수서류의 보관 · 관리

1. 고객센터서비스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전자화대상서류가 누락됨이 없이 스캐닝(칼라 스캐닝이 필요한 서류는 칼라스캐닝)을 한 후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화대상서류 및 전자화 이관서류 목록을 전자화기관에 이관하고 전자화이관서류목록을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12)
2. 출원서비스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전자화대상서류가 다음에 해당하고, 전자문서가 전자화대상서류와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기록관장에게 전자화대상서류의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산업재산권 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11)
 - 1) 전자화결과 정정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2) 전자화결과 정정신청 대상이 아닌 서류가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3. 출원서비스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류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화대상서류의 폐기를 유보할 수 있다.
4. 전자화대상서류를 폐기한 경우에는 전자화대상서류를 스캐닝한 이미지를 원본으로 본다.
5. 출원서비스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1999. 1. 1. 이전에 출원된 중간서류에 대하여는 서류철의 위치에 따라 서류철실 및 각 심사국에 이를 이관한다.

3.7.



서류 등의 열람·복사신청

1. 출원에 관한 서류, 모형 및 견본에 대해서는 그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³¹⁾. 다만, 특허청장은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특§216·실§44·디§76·상§87)
 - 1)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 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그 서류를 제출한 자가 아니면 그 서류(서류의 일부에 그 취지의 기재 또는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는 해당되는 곳 또는 그 첨부서류. 이하 3. 및 4에 있어서도 같다)의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상표출원에 관한 서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개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서류 제출자 및 제출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
- 31) 특허출원 절차에서 출원인은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발명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나 심판 또는 침해소송을 통해 권리자에게 대항하려고 한다. 이때 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은 특허청에 진행된 서류 일체를 복사 신청하여 이를 검토·분석한 후 이의신청이나 심판을 제기하게 되므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신청은 가급적 제한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서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특허법 제21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해관계를 증명한 자에게는 관련서류의 모두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다음의 서류에 대해서는 출원인(대리인), 이해(利害)관계를 증명한 자가 아니면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출원공개되어 있는 것, 설정등록되어 있는 것,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디자인출원공보에 게재된 것,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있어서는 비밀이 해제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1) 출원중인 것
- 2) 출원 취하 또는 포기가 있었던 것
- 3) 출원 각하된 것
- 4) 거절결정이 확정된 것

또한, 특허출원 등에 의거하는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기초가 된 이전의 출원 또는 이중출원에 관련되는 출원의 원래의 출원이 상기에 해당할 때라 하더라도 그 특허출원 등에 의거하는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또는 이중출원에 관련되는 출원이 출원 공개된 경우, 설정 등록된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디자인출원공보에 게재된 경우 또는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있어서는 비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이전 출원 또는 이중출원의 원래의 출원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해(利害) 관계를 증명한 자라 함은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서류로 증명한 자를 말한다.

- 1) 열람에 대해 출원인의 동의를 받은 자
- 2) 출원공개 전 또는 등록 전에 출원인으로부터 그 발명·고안 또는 디자인 실시에 대해서 경고 등을 받은 자.

3.8.



서류의 인증절차

1. 서류의 등·초본은 원본과 상위 없음을 인증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 명의로 교부한다. 단,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제출한 서류로서 등·초본을 작성할 수 있다.
2. 외국에 대하여 출원할 때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서류의 등·초본 또는 증명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와 출원할 국명을 기재한 우선권증명신청서(특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3.9.



서류의 송달(통지) 대상

1. 문서의 송달이라 함은 출원인,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등에게 당해 사건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서류를 교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편, 문서의 통지도 그 목적이나 법률적 효과의 발생에 있어서는 송달과 동일하다 하겠으나 무방식이라는 점에서 송달과 구별된다.
2. 어떠한 경우에 송달 또는 통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허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고객센터서비스과에서 송달 또는 통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원인코드통지서
 - 포괄위임등록번호통지서
 - 출원번호통지서
 - 출원에 관한 각종 증명(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등)
 - 2) 출원서비스과에서 송달 또는 통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반려이유안내서 및 반려통지서
 - 보정요구서
 - 보정요구에 대한 지정기간의 연장승인서
 - 서류제출요구서
 - 절차의 무효처분통지서
 - 과오납통지서
 - 우선권주장 등 무효통지서
 - 심사청구기간만료일 예고통지서
 - 기타 출원에 관한 서류의 통지

3.10.



서류의 송달(통지) 방법

1. 각종 문서의 송달(통지)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교부송달·우편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로 구분할 수 있다.
2. 교부송달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서류의 등본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특령§18①)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특령§18②)
다만, 문서발송대장 또는 문서교부대장의 해당란(서명란)에 수령자가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재 날인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의 비치로 갈음할 수 있다.(특허청 송달함설치 운영규정 §7)
3. 우편송달은 특허청이 송달할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을 말하며,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특령§18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특령§18②)
4. 특허청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고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의 통지 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해 통지 등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특§28의5)

3.11.



송달처가 불분명한 서류의 송달방법(공시송달)

1.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특§219①).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특§219②)
2.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웹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웹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특§219③)
3. 최초 공시송달후 동일 당사자에게 다시 관계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 최초의 반송서류 안내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정보변경신고가 없고 서류의 반송사유가 아래와 같을 때에는 우편송달을 하지 아니하고 최초의 반송사유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다.
 - 가. 수취인의 이사
 - 나. 수취인의 주소불명
 - 다. 수취인의 불명

3.12.



공시송달 절차

1.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에 발송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출원인의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특칙 별지 제5호서식)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4. 3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주소가 확인되면 위 2항의 방법으로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 한다.
5. 3항에 의해서도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에 대하여 정보기획국으로 공시송달 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경우에는 위 2항의 방법으로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한다.

3.13.



재외자에 대한 서류 송달절차

1.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한다.(특§220①)
2.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특§220②).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특§220③)

참 고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재외자)는 그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특§5)³²⁾

32)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는 해당서류의 반려사유에 해당된다.

3.14.



특허청이 송달하는 서류의 수신인

1. 송달의 수신인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는 자가 된다.(특령§18④)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수신인으로 한다.
3. 송달을 받을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특령§18⑤)
4.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수신인
 - 1)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허청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므로(특§9) 대리인중 누구에게 보내도 유효하다.(특령§18⑥)
 - 2) 다만, 관례적으로 출원서에 첫번째로 기재된 대리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외 ○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또한, 중도 수임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외 ○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대리인이 없이 출원인이 2인 이상인 때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특§11), 대표자선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대하여 각자가 대표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보내도 유효하다. 다만, 관례적으로는 전항과 같이 출원서에 표시된 자중 첫번째에 기재된 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외 ○명”으로 한다.
6.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특령§18⑦)

3.15.



특허청이 송달하는 서류의 송달장소

1.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는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특허청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특령§18⑧)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수행하고, 그 대리인이 특허법인으로서 특정 절차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변리사의 소재지를 수신장소로 한다.³³⁾

2.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특령§18⑨)

33) 특허법인제도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인은 그 명의로써 산업재산권 절차에 관한 대리를 할 수 있고, 특허법인은 지방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특정 변리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리업무 및 문서송달의 효율성을 돕기 위해 특정 절차에 대한 변리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변리사의 소재지로 관련 서류를 송달 또는 통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16.



공동출원시 출원서의 기재 방법

1. 출원인 전원이 발명자이고 특별히 지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서에 공동출원인 전원의 출원인코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요하지 않는다.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대표자”라고 기재하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한다.
3.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갑은 $\frac{1}{3}$, 을은 $\frac{2}{3}$ 등으로 특별히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출원인대표자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 다음 행)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특칙§27·실칙§17①·디칙§28·상칙§36)

3.17.



서류의 사용어

1.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위임장·국적증명서 등(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제외)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에는 그 서류의 제출시에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특칙§4, 실칙§17①, 디칙§1의4②)
3. 상표출원의 경우 위임장·국적증명서·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칙§1의4②)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하여는 반려한다.(특칙§11)

3.18.



특허청구범위를 미기재한 출원서에 대한 처리

1. 2007년 7월부터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특허법 제42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8조 제5항)³⁴⁾
2.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출원서를 처리할 때는 청구범위제출유예안내서³⁵⁾를 발송한다.
3. 청구범위제출유예안내서에는 제출기한(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 간주된다는 내용과 청구범위 제출방법 안내를 포함한다.
4.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청구 또는 조기공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에 심사청구 또는 조기공개를 기재했을 경우 이를 반려한다.

34) 구법상에서(2007. 7. 1. 이전 출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특허출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구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5호)

35)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특허청구범위를 공란으로 비워두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없음”, “추후제출”과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

나. “.”과 같이 무의미한 부호

3.19.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기타사항]란에 미생물기탁을 체크하고 그 다음 행에 [미생물 기탁]란을 신설하고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또한 [첨부서류]란에 미생물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명(미생물 기탁증명서)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설 명

-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³⁶⁾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특령§2①)
-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 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특령§2②)

36)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조에 의한 수탁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

- 미생물 관련 발명의 명세서에는 기탁사실(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수탁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만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³⁷⁾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특령§3)

37)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특령§2①단서)

3.20.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

1.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특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에는 [기타사항]란에 서열목록을 체크하고 그 다음 행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란을 신설하고 [서열개수] [서열목록 전자파일]을 기재하여야 한다.(특칙§21의2)
 - 1)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을 기재 또는 첨부한 명세서
 - 2) 서면출원인 경우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
 - 3) 서면출원인 경우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다른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대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설 명 서열목록의 작성 방법

- 서열목록은 WIPO표준에 따른 특허청 고시 제2007-5호 「핵산염기 서열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특허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서열목록 작성기: KOPATENTIN)으로 작성하도록 권장한다.

- 「특허출원의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의 작성 및 제출 요령」은 WIPO 표준 ST.25를 채택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작성된 서열목록은 국내 특허출원 뿐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시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그리고 지정국 및 선택국에서 각각 요구하는 서열목록 작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21.



국방관련 출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1조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인 경우에 동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유지해제통지 또는 비밀해제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특칙§9의2③, 실칙§17①)

〈비밀취급 절차〉 (특령§12, §13, 실령§7)

1. 특허출원이 국방관련 출원인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다.
2.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출원인 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한다.
3. 방위사업청장은 조회를 받은 경우에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한다.
4. 비밀취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명자 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당해 출원건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 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비밀취급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 등에게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한다.

3.22.



증명서류의 원용

1. 출원·청구 등의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으면서 아래의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특칙§10①·실칙§17①·디칙§28·상칙§36)
 - 1) 대리인(특허관리인 포함)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위임장(특§7·특칙§5①)
 - 2)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30②)
 - 3)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증명서류(특§54④)
 - 4) 복수당사자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특§11②·특칙§6)
 - 5)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절차를 밟는 경우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특칙§7①)
 - 6) 절차를 밟을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특칙§7②)
 - 7)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명령을 받은 다음의 서류(특칙§8)
 - 국적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 비조약국 또는 비협정국 국민이 제출하는 증명서류

8) 절차를 밟을 자가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영업소) 또는 인감 등의 출원인정보변경을 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특칙§9③)

2. 출원·청구 등의 절차를 밟을 때에 이미 위 1)내지 8)의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그 내용이 동일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특칙§10②·실칙§17①·디칙§28·상칙§36)

3. 상기와 같이 사본을 제출할 시 또는 이미 제출된 동일 내용의 증명서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와 같이 첨부서류란에 이미 제출한 원본을 원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위임장 1통(이하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함)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6-1234567

4. 다음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특칙§10③)

- 1)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출원 등의 절차를 밟는 경우
- 2)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출원 등의 절차를 밟는 경우

3.2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제8조(증명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공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그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여 그 증명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특칙§8①·실칙§17①·디칙§28·상칙§36).
2.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의 종류, 증명서류의 제출원인이 되는 업무, 확인정보의 내용 및 기재방법 등 증명서류 제출 생략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3.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의 종류(증명고시 §2)
 - 1) 주민등록등(초)본
 - 2) 법인등기부등본
 - 3) 호적등본(폐지 →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
 - 4) 사업자등록증
 -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6) 장애인증명서
 -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 8) 제적부(폐지 →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

※ 정부의 행정정보공유대상 추가 확대시 고시에 반영

4. 위의 증명서류에 대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예와 같이 관련 서식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제출생략서류】란을 신설하여 제출생략 서류명과 해당 확인정보를 차례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증명고시§4·§5)

〈예〉

- 주민등록등(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5. 확인정보로 확인한 증명서류가 휴·폐업, 법인청산,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또는 확인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증명고시§6)



4. 분할·변경·이중 출원

4.1.



분할출원의 절차적 요건

적법한 분할출원으로서 원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중일 것

분할출원이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의 분할시에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출원이 취하, 포기, 무효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출원의 분할을 할 수 없다.

2. 출원의 분할이 소정의 기간내에 있을 것

1) 특허출원에 대한 분할

특허법 제52조 제1항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한하여 출원의 분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2001. 6. 30 이전 특허출원〉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월 이내(구 특§47①)

- ① 특허출원일
- 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특§54)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③ 국내우선권주장(특§55)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 선출원일
- ④ 상기 ②와 ③의 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 있어서는 최선일

상기의 해당일로 부터 1년3월을 경과한 후 특허결정등본의 송달전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간(구 특§47②)

- ① 출원심사의 청구(특§59)와 동시
- ② 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음을 통지 받은 날부터 3
월 이내
- ③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제출기간(특§63)내
- ④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2001. 7. 1 이후 특허출원〉

특허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아래의 기간(특§47①)

- ① 특허결정서를 송달하기전(다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최초거절
이유통지를 받기전)까지의 기간
- ②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
출 기간
-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
일 이내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분할

〈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 ①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부터 2월 이내(구 실§13①·구 실칙§9)
- ② 구 법 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적요건 불비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 기간내

〈2001. 7. 1 이후 특허출원〉

특허법(§52, §47①) 준용

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분할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을 할 수 있는 아래의 기간(디§18④)

-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서를 송달하기 전까지의 기간
- ②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분할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

3. 원출원의 출원인과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분할출원 시점에서 동일할 것

4.2.



출원 상호간 변경출원(특허 ↔ 실용신안)

적법한 변경출원으로서 원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해서는 변경출원이 다음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중일 것

변경출원이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의 변경시에 변경전의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출원이 취하, 포기, 무효 또는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2. 변경출원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출원할 것

1)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실용신안등록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
- ②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이 경과하기 전

2) 원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의 특례

- ① 특허법 제82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허법 제20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구 실용신안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 제출된 후에 변경출원이 가능하다.

- ②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구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각각 동조동항의 결정이 있는 후에 변경출원이 가능하다.

3. 원출원의 출원인과 변경출원의 출원인이 변경출원 시점에 동일할 것

참 고

구 분	분할출원	변경출원	이중출원
개 요	2 이상의 발명(고안)을 하나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 경우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분할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중복해서 출원
적용기간	-	원출원이 2006. 10. 1. 이후	원출원이 1999. 7. 1. ~ 2006. 9. 30.
기 간	특허법 §42 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원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 실용신안권 설정등록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출원일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		
원출원 취하	-	원출원 취하간주	-
관련규정	특허법 §52 실용신안법 §11	특허법 §53 실용신안법 §10	구특허법 §53 구실용신안법 §17

4.3.

상표의 변경출원³⁸⁾

1.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 및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함)은 상호간에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다.(상§19①). 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은 신규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상§19②)
2. 출원의 변경은 출원의 주체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새로운 출원을 최초 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최초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상§19③⑤)
4. 출원의 변경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상§19④)

38) 단독디자인등록출원과 유사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의 변경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상호간의 변경출원은 구법상에서 인정되었으나, (구 디§20), 2005. 7. 1. 이후 출원의 변경은 보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디§18)

4.4.



방식상의 하자를 갖는 출원의 변경출원

방식상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치유가 되지 않은 출원을 원출원으로 하는 변경출원은 원칙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

설 명

변경출원이 수리되면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방식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출원을 원출원으로 하는 변경출원을 수리할 경우에는 출원인은 원출원의 하자에 대한 보정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출원과 원출원의 동일성이 부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변경출원을 불수리(반려)하면 출원인은 원출원의 방식상의 하자를 치유하면서 적절한 변경출원을 하면 될 것이므로 출원인에게 다른 불이익한 상황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변경출원은 반려하거나 원출원의 보정 이후 수리하도록 한다.

4.5.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분할·변경출원이 동시에 청구된 경우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분할 또는 변경출원을 한 경우에는 이들 절차가 형식적으로 적법하면 양자 모두를 수리하여 각각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4.6.

이중출원의 절차적 요건(특허·실용신안)³⁹⁾

적법한 이중출원으로서 원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해서는 이중출원이 다음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출원(등록)이 특허청에 계속중일 것

이중출원이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중출원시 원출원(원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실용신안권)이 특허청에 계속중이거나 설정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출원이 취하, 포기, 각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등록된 실용신안권이 포기,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중출원을 할 수 없다.

2. 이중출원 가능 기간내에 출원할 것

1)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인 경우

①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이중출원한 것일 것

② 원출원이 국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의 특례

- 구 실용신안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구 실용신안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 제출된 후에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39) 원출원이 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출원에 적용된다.

- 구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결정이 있는 후에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2)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① 특허출원의 출원일부터 아래의 기간내에 이중출원한 것일 것

- 특허결정서를 송달받기 전
-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경과하기 전

② 원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의 특례

- 특허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구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 제출된 후에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결정이 있는 후에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3. 원출원의 출원인과 이중출원의 출원인이 이중출원 시점에서 동일할 것

4.7.

**이중출원과 분할출원의 관계**

출원의 분할이 있는 후에는 그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이중출원을 할 수 있다.

설 명

출원의 분할은 동일한 출원형식 내에서 2 이상의 고안 또는 발명을 별개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실용신안등록출원(특허출원)의 일부를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동일한 출원형식으로 출원의 분할을 하고, 그 분할출원을 다시 이중출원하여야 한다.

4.8.



분할·변경·이중출원시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적용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을 분할·변경 또는 이중출원 하거나 디자인·상표등록출원을 분할·변경하는 경우에 분할·변경 또는 이중출원된 새로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 구 실용신안법 제6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및 상표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출원시의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취급한다.

1. 원출원시 출원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취지등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할·변경 또는 이중출원시 새로운 출원서에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적용 취지를 기재하고 동 증명서류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원출원시 출원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적용 취지만을 기재하고 동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분할·변경 또는 이중출원시의 새로운 출원서에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적용 취지를 기재하고, 분할·변경 또는 이중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9.



분할·변경·이중출원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을 분할 또는 변경·이중출원을 하거나 디자인 등록출원을 분할 또는 변경출원하는 경우 및 상표등록출원을 분할·변경하는 경우에 새로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54조제4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4항, 상표법 제20조제4항의 규정⁴⁰⁾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취급한다.

1. 원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등을 기재하고 우선권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할·변경 또는 이중출원되는 새로운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등을 기재하고, 우선권주장증명서류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취지를 명기하고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원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등을 기재하고 우선권주장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분할·변경 또는 이중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등을 기재하고, 분할·변경 또는 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0)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증명서의 제출

4.10.



원출원의 무효와 분할·변경·이중출원

1. 원출원이 특허법 제16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로서 무효처분통지서의 송달일과 같은 날에 분할변경 이중출원에 관한 절차가 행하여진 때에는 적법한 분할·변경·이중출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다만, 출원의 분할·변경, 이중출원에 관한 절차가 무효처분통지서 송달시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법한 분할·변경이중·출원으로 인정한다.

4.11.



원출원의 취하·포기일과 같은 날에 출원된 분할·변경·이중출원의 취급

원출원이 취하 또는 포기된 날에 분할·변경·이중출원된 경우에는 그 분할·변경·이중출원은 적법한 출원으로 취급한다.

설 명

적법한 분할·변경·이중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분할·변경·이중출원시에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중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출원이 취하 또는 포기된 날과 같은 날에 분할·변경·이중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와 분할·변경·이중출원에 관한 절차의 선후를 구분하기가 곤란하며, 분할·변경·이중출원을 한다는 것은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중이라는 출원인의 인식하에 당해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분할·변경·이중출원은 적법한 것으로 취급한다.



5. 절차의 보정

5.1.



특허청장이 명하는 보정의 범위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⁴¹⁾을 명할 수 있다.(특§46·실§11·디§17·상§13)
 - 1) 특허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제132조의 3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특§6)
 - 2)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특§82·실§17·디§34·상§37)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기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특§16①·실§3·디§4·상§5)

41) 절차의 보정에 대한 판례(대법원, 1992. 9. 28선고, 80누414 판결)

5.2.



보정된 명세서·도면을 재보정하는 경우

1. 보정된 명세서·도면을 다시 보정하는 경우는 당해 보정서의 “보정할 사항”란에 “○○년 ○○월 ○○일자 제출한 보정서 중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같이 보정하는 서류명 및 제출일자, 보정할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수리한다.
2. 이 경우 절차적으로는 보정서를 보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되나 그 실체는 명세서·도면을 보정하는 것이므로 보정기간의 제한은 여전히 적용된다.

설 명

출원인은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보정은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한 명세서 등과 일체의 것이 되어 출원서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먼저 제출된 보정서를 보정의 대상으로 하는 보정도 “명세서 등의 보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5.3.



발명(고안·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경우

1.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고안자·창작자중 일부의 발명자·고안자·창작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그 출원의 등록여부결정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고안자·창작자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여부결정 이후에도 정정할 수 있다.(특칙§28·실칙§7·디칙§28)
2. 특허여부결정은 특허·거절결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심사전치는 거절결정을 취소할지가 불확실하므로 심사전치에서 제출된 발명자 보정은 반려한다. 단 심사전치단계도 발명자의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은 인정하고, 취소환송에 의해 심사관이 재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것이므로 발명자 추가가 가능하다.

※ 명백한 오기의 기준 : 발명자가 동일인이나 발명자의 성명이 개명을 통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오기재한 경우, 출원시 동일발명자를 중복기재한 경우, 발명자(외국인)의 성명이 음역상 차이로 타출원과 불일치하는 경우
3. 상기의 추가 등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출원서 등 보정서) 또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출원서 등 보정서)에 따라 작성된 보정서에 추가, 정정 등의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다.

5.4.



지정기간 경과후 제출된 출원서등 보정서

1. 지정기간 경과후 출원무효처분통지서의 발송일(이하 “무효처분일”이라 한다) 전에 출원서등 보정서가 제출되어 출원의 하자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무효처분을 취소하고 출원서등 보정서를 수리한다.
2. 무효처분일 이후에 제출된 보정서는 반려(불수리)한다.
3. 무효처분통지서 발송일 이전에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되었으나, 무효처분 당시 보정서의 제출사실을 알지 못하여 무효처분한 경우에는 보정내용을 검토하여 출원절차의 흠결이 해소된 경우 그 무효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보정서를 수리한다. 또한 무효처분통지서를 발송한 날에 제출된 보정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5.5.



절차보정 완료후 새로운 보정사항이 발견된 경우

1. 절차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이 완료된 후에 보정명령시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절차보정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새로운 보정 사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법 제46조에 의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최초 보정명령을 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1회의 보정지시로 가능할 수 있었던 사항을 누락하여 추가보정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정사항의 보정에 대하여는 보정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납부요령§3②)

5.6.



보정명령 사항과 무관한 자진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1. 보정을 명하였으나 아직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출원에 대하여 보정 명령의 취지와 무관한 자진보정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출원서와 보정서의 주체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수리한다.
2. 상기의 보정서가 수리되는 경우, 당해 보정사항이 보정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납부요령§2)

5.7.



지정기간내에 보정명령 사항중 일부만 보정한 경우

하나의 보정요구서에 2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지정기간내에 제출된 보정서에 하자의 일부만을 보정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다른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서의 추가제출이 없으면 그 절차를 무효로 한다. 단, 2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였으나 일부에 대해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보정을 명할 수 있다.

설 명

또한 특허법 제16조에서 “특허청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일부만 보정한 경우에는 보정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⁴²⁾이 되므로 그 절차를 무효로 한다.

42)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서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하여 보정사항의 일부 보정은 보정사항의 불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문과 같이 취급한다.

5.8.



복수의 보정서로 보정을 행하는 경우

1. 하나의 보정요구서에 2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출원인이 이를 복수의 보정서로 보정절차를 밟을 경우, 다른 하자의 치유와 독립하여 치유가 가능한 하자에 대한 보정서는 수리한다. 다만, 다른 보정사항은 최초에 주어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출원서·청구서 기타 절차에 관한 서류 및 그 첨부서류에 보정하여야 할 사항이 2 이상인 경우에 이를 일시에 일괄하여 보정하는 때에는 1건의 보정으로 보아 1건의 보정료를 납부하고, 이를 2회이상으로 나누어 보정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으로 보아 매회마다 당해 보정사항이 보정료 납부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납부요령§3①)
3. 수수료 계산 예시
보정명령 사항이 【①수수료 부족 20,000원 ② 위임장 미제출 ③미생물기탁증명서 미제출】인 경우의 수수료
 - 1) 1회에 모든 보정사유를 치유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전자문서로 제출 : 미납 수수료 + 보정료 3,000원
 - 서면으로 제출 : 미납 수수료 + 보정료 13,000원
 - 2) 2회 이상 나누어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 1회 : 수수료만 납부하는 경우 : 미납 수수료(보정료 없음)

5. 절차의 보정

- 2회 : 위임장만 제출 : 위임장 + 보정료(전자문서 제출 3,000원, 서면 제출 13,000원)
- 3회 : 미생물기탁증명서 제출 : 미생물기탁증명서만 제출(보정료 없음)

5.9.



보정서·의견서·답변서 등의 서식만이 제출된 경우

명세서등 보정서·의견서·답변서 등의 내용이 첨부되지 아니하고 서식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설 명

명세서등 보정서는 그 실체적 내용이 첨부서류에 있는 것이며, 보정서등 서식 자체에는 실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내용이 첨부되지 아니한 보정서 등은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으로 인정하여 반려한다.

5.10.

**보정서 서식없이 보정내용만 제출된 경우**

보정서 서식없이 보정내용만 제출된 경우에는 다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접수하고 해당 보정서가 방식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보정을 명한다. 다만 그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려하도록 하며, 서식의 흠결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다.

5.11.



1건의 서류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1. 별도의 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없이 보정사항을 의견서에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보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만일 보정할 수 있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발견 즉시 출원인에게 별도의 보정서가 제출되어야 함을 안내한다.
2. 보정사항이 기재된 의견서 자체는 적법한 서류이므로 수리해야 하고, 이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이 보정요구를 할 수 없다.
3. 의견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정기간 만료 후 접수되는 명세서 등 보정서는 반려한다.

5.12.



기준일 이전에 제출된 명세서 등 보정서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31월을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특§201①) 이 기간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을 기준일이라 한다.(특§201④)
2.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어 번역문(특§①)을 제출하고 기준일을 경과한 후(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 이후)가 아니면 보정(특§204② 및 특§205②의 규정에 의한 보정 제외)을 할 수 없다.(특§208④)
3. 기준일 이전에 제출된 명세서등 보정서는 기준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다.
4. 명세서등 보정서가 출원심사청구서와 동일자에 제출된 경우 이를 적법한 기간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5.13.



보정료 납부대상

권리별	보 정 료 납 부 대 상	
	보 정 사 항	보 정 료 납 부 범 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공 통	1. 위임장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포괄위임인 경우 출원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② 서명·날인이 없거나 선명하지 않은 경우 및 정당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한 경우 ③ 위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2. 심판청구이유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번역문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심판청구서 부분	①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 수대로 부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5.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시 첨부서류	① 명세서 및 (가)호 도면 또는 (가)호 표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특 허 실용신안	1. 명세서 (도면포함)	①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서에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2. 정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서류	① 전용권자, 질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 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등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	1. 도면	①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2. 출원변경	①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②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권리별	보 정 료 납 부 대 상	
	보 정 사 항	보 정 료 납 부 범 위
상 표	1. 단체표장 경우 정관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2. 지정상품의 보정	①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란 이유로 보정하는 경우로 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i) 갱신출원이 아닌 경우로써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별표1(2)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 분중 상품군(서비스업군)의 명칭을 동일하게 기재 한 경우 ii) 지정상품을 “---부품, ---부속품, 기타---, 각종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
	3. 건본의 보정	① 건본을 보정하는 경우

※ 상표등록출원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의 구분 및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시 3천원, 서면 제출시 1만3천원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보정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1만3천원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보정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징수규칙\$5①6)

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보정후 상품류의 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상품류의 구분마다 5만6천원

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보정후 상품류의 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상품류의 구분마다 6만6천원

5.14.



기간경과 후 제출된 보정서의 수수료 징수여부

1. 지정기간 경과 후 무효처분일 전에 제출된 출원서등 보정서는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지정기간경과 후 무효처분일 전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자는 기간연장에 따르는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기간연장의 효과를 갖게 되어 보정서 제출마감일 전에 기간연장신청을 한 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2. 그러나, 상기의 문제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고 또한 출원인 스스로 출원무효의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 되므로 그에 대한 수수료 부과등의 처분은 행하지 않기로 한다.

5.15.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 등의 취급

1. 실체심사와 관련한 의견서
등록여부결정 전에는 수리하여 심사국에 이관하여 실체심사에 참조하도록 한다.
 2.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서
반려통지 전에는 수리하여 심사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절차의 보정과 관련한 보정서
무효처분 전에는 수리하여 보정을 인정한다.
 4. 디자인·상표출원에 있어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보정서
등록여부결정 전에는 수리하여 심사국에 이관한다. 의견제출기간 이후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도면 등 보정서가 거절결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제출하였다면 수리한다. 거절결정통지서의 송달일과 보정서의 제출일이 동일자일 경우 명백히 그 선후가 구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정서를 접수한다. (디§18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보정을...디자인 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심사전치의 경우, 심판청구후 30일이 경과하여 출원과에 제출된 도면 등 보정서는 반려한다.(디§18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보정)

5. 특허·실용실안등록출원에 있어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려(보정서 제출시 기간단축을 표시한 경우는 원래의 지정기간과 관계없이 기간단축신청서 제출일자로 단축됨)한다.



6. 우선권 주장

6.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

1. 우선권주장 요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우선권주장 출원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파리조약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에 의한 출원으로 제1국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한 출원일 것
- 2) 제1국의 정규의 국내출원에 기초한 출원일 것
- 3)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의 내용이 동일할 것
- 4) 우선권주장 기간내에 우선권주장출원을 할 것
- 5) 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할 것

2.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자

- 1) 조약당사국 국민 또는 조약당사국에 주소 또는 현실적으로 진정한 공업상 또는 사업상 기반을 가지는 비동맹국 국민일 것.
- 2)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중 적어도 1인 이상이 상기 1)에 해당되어야 할 것.
- 3) 승계인의 경우에는 출원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우선권에 관한 권리도 동시에 승계하여야 할 것.

※ 조약당사국은 파리협약의 동맹국 및 WTO의 회원국을 포함한다.

3. 제1국의 정규의 국내출원에 기초한 출원

- 1) 우선권은 제1국에 있어서 최초의 정규출원 또는 최초출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출원에 의해서 발생된다.

- 2) 제1국 출원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또는 발명자증(inventor's certificate)이어야 한다.⁴³⁾
- 3) 취하 또는 포기된 출원, 거절결정된 출원 또는 무효처분된 출원의 경우에도 출원일자가 확정될 수 있는 출원은 정규출원으로 인정한다.

4. 우선권주장 출원기간

- 1)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 제1국 출원일부터 1년
- 2) 디자인·상표등록출원 : 제1국 출원일부터 6개월
- 3) 우선권주장출원과 그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서로 상이한 종류의 출원인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은 제1국 출원에 의한다.

예 1 : 제1국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의 우선권주장출원기간은 제1국 출원일부터 1년이다.

예 2 : 제1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의 우선권주장출원기간은 제1국 출원일부터 6개월이다.

- 4) 우선권주장기간의 말일이 우리나라의 공휴일 또는 기타 출원을 접수할 수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최초의 집무일까지 연장된다.

5. 우선권주장 절차

- 1)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에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 출원국명 및 출원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특§54③·실§11,디§23③·상§20③)

43) 특허법 제54조에는 제1국 출원을 특허출원만 규정하고 있으나 파리협약에서는 제1국 출원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 및 발명자증일 경우도 당사국에 제2국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1국 출원이 특허외에 디자인출원 등의 다른 형태의 출원인 경우에도 그 우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심사지침서)

2) 우선권증명서의 제출

(1) 특허·실용신안

최초출원국 정부가 인정하는 특허출원일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을 기재한 서면과 발명 또는 고안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다음에 해당하는 날중 최선일(最先日)로부터 1년4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조약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 ②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 ③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제출로 우선권주장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일본⁴⁴⁾, 유럽특허조약(EPC)의 계약국⁴⁵⁾(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이 유럽특허조약의 제4조에 따른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경우에 한정), 미합중국⁴⁶⁾(특허청장이 미국특허상표청으로부터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이 이에 해당한다.

44)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2001.6.30 제정, 2001.7.1 시행

45) 동 고시 2007.6.29개정, 2007.7.1 시행

46) 동 고시 2008.10.13개정, 2008.10.14 시행. 특§54④2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것부터 적용

(2) 디자인·상표

최초출원국 정부가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일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을 기재한 서면과 도면 또는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우선권주장 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디§23④·상§20④)

3) 우선권증명서류의 국어번역문 제출

(1) 특허·실용신안

〈번역문 제출기간이 2005.12.31. 이전 만료되는 경우〉

우선권증명서류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국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번역문 제출기간이 2006. 1. 1. 이후 만료되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중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에 의한 번역문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특칙§25④·실칙§17①)

(2) 디자인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디칙§10②)

(3) 상표

우선권증명서류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칙§12의②)

6.2.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특허·실용신안)

1.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자
 - 1)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우선권주장 출원의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그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으로 먼저 한 출원(선출원)의 출원인 및 그 출원의 승계인이다.(특§55①·실§11) 따라서, 선출원과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후출원)의 출원인은 후출원의 출원시점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 2) 공동출원의 경우에도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은 완전히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동일인임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 ① 출원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일치될 것
 - ②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일치될 것
 - ③ 출원인의 인장이 일치될 것
 - ④ 출원인코드가 일치될 것
2.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한 기간
 - 1) 선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출원일부 터 1년 이내이다.(특§55①1·실§11)
 - 2)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대하여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시의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특§52②4·§53②4·실§11)

3.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선출원

- 1) 선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2) 선출원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 3) 선출원이 분할출원·변경출원된 새로운 출원이거나 또는 이중출원된 새로운 출원이 아닐 것
- 4) 선출원이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시에 특허청에 계속중일 것
 - ① 선출원이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시에 포기, 취하, 각하 또는 무효가 된 출원이 아닐 것
 - ② 선출원이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시에 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⁴⁷⁾되어 있지 않을 것
 - ③ 선출원이 구 실용신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⁴⁸⁾되어 있지 않을 것

4. 국내우선권주장의 절차

- 1)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특허출원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특§55②·실§11)
- 2) 국내우선권주장의 절차에 있어서는 우선권주장증명서류의 제출은 요하지 않는다.
- 3) 후출원에 대해서도 선출원시에 주장한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후출원과 동시에

47) 등록여부의 결정이 확정된 시점은 특허결정서가 출원인에 도달한 시점이며, 거절결정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거절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로 본다(심사지침서).

48) 구 실용신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때는 심사관이 설정등록을 의뢰하거나, 특허청장이 출원인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한 때가 아니라 특허청장(등록서비스과장)이 설정등록한 때이다(심사지침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후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원용할 수 있다.

5. 선출원의 취하등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일부터 1년3월이 경과하였을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특§56①·실§11). 다만,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001. 7. 1. 이후 2006. 9.30. 이전 출원된 출원인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구 실§19①). 이 경우에 당해 선출원이 다음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 2) 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3) 당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취하된 경우
- 4) 구 실용신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6.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

- 1)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일부터 1년3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특§56②·실§11).
- 2)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3월 이내에 취하되었을 때에는 당해 우선권 주장이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특§56③·실§11)

※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특허법 제30조의 적용에 있어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으나 국내우선권은 그 출원일이 소급된다.

6.3.



파리조약 제4조A(2)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

1. 파리조약 제4조A(2)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출원한 것으로 인정된 파리조약 당사국의 국명에 대하여는, 그 출원이 지역출원 또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이 출원(제출)된 하나 또는 2이상의 국명을 기재한다. 다만, 적어도 1개국의 국명을 기재하면 족한 것으로 한다.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은 최초의 출원을 수리한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파리조약§4D(3)). 이 경우, 최초의 출원을 수리한 주무관청에는 정부간 국제기구⁴⁹⁾도 포함한다.

49)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유럽특허청(EPO),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OAPI), 유러시아특허청(EA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등.

6.4.



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에 관한 취급(특허·실용신안)

1. 특허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사항에 대해서 보정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는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특§54⑦·특§55⑤·실§11)
2. 우선권주장의 보정 및 추가가 가능한 출원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 및 추가를 할 수 있는 출원은 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출원시 특허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우선권주장의 보정범위
 우선권주장의 전부 취하, 복합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일부 우선권주장의 취하 및 우선권주장의 오기를 정정하는 보정은 물론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는 보정도 가능하다.
4. 우선권주장을 취하(일부취하 포함)하고 추가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 출원서 등 보정서를 제출한다.

6.5.



가공의 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1. 가공의 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그 우선권주장이 형식적으로 우선권주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우선권 주장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그 우선권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2. 다만, 우선권주장 사항이 명백한 오기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우선권 주장 사항의 보정을 인정한다.

6.6.

**WTO 회원국간의 우선권주장 출원**

WTO/TRIPS 협정 제2조 제1항에 파리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권주장에 관한 규정(제4조)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0. 1. 1.부터는 파리조약 가입국은 아니나 WTO 회원국의 출원을 기반으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면 그 우선권을 인정한다.



7. 출원인변경신고 및 출원의 취하·포기 등

7.1.



출원인변경신고의 취급절차

1. 관련 규정

- 1)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이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특§38④·실§11·디§24·상§12①)
- 2)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속·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특§38⑤·실§11·디§24·상§12④)
- 3) 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특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출원의 등록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26).
 - ①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양도증 등)
 - ②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위임장)

2. 신고서와 증명서류의 관계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증명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는 수리하지 않는다.

3.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특정승계 :

① 매매계약, 증여 등

양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증은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문서이므로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 않으나, 다음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양도·양수인의 성명(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양도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표시

- 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구분 및 지정상품 등

㉢ 양도인의 날인(특허청에 출원인코드신청시 등록된 인장)

※ 양도인의 양도증에 날인된 인장과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시 등록된 인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양도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상의 인장이 날인된 양도증 등의 제출을 명한다.

※ 동일법 영역내에서 하나의 양도증으로 다수의 건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한다.

②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따른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인 이사의 경우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보므로(상§368), 출원인변경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의결서), 법인등기부등본, 출석주주의 의결권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또는 출자자명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가 회사에 무상양도하는 경우라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없으므로 무상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승계(포괄승계)

① 상속

상속에 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회사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법인증명서 또는 공증인에 의한 증명서

- 법인증명서 등의 경우 당해 법인의 주소와 명칭 등의 사항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공증인에 의한 증명서는 공증기관의 명의를 의해 당해 법인을 증명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대표자가 법인임을 선서한다는 내용을 공증한 증명서는 효력이 없다.

③ 포괄유증

유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내지 제1070조(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에 규정된 서류(유언자의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및 구술증서 등)

4. 양도인이 정당한 양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인감증명서 : 발급후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

2)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당해 서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인 또는 법인국적증명서)로 대체. 단, 개인 또는 법인국적증명서에는 성명(명칭)·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서명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5. 동의서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특§37③)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의서의 첨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1) 공유자 전원이 동일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2) 일부 공유자가 다른 전원의 공유자에게 양도한 경우
- 3) 공유자가 각각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증이 한통으로 작성된 경우

7.2.



중간의 출원인변경신고를 생략한 출원인변경신고

1.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상표등록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가 여러번에 걸쳐 명의이전된 경우에는 당사자간(계약전 당사자간 또는 각 계약당사자간)에 그간의 출원인변경신고를 생략하고, 현재의 출원인(갑)으로부터 현재의 진실한 권리자(을)에게 출원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에는 갑으로부터 직접 을에게로 출원인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특§38④· 실§11· 디§24· 상§12①)
2.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7.3.



공동출원인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

공동출원인중 1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본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포기서를 첨부한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 명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26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또한, 특허법 제38조제4항에 의거하여 특허출원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이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다른 공유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권리를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원인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7.4.


방식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출원의 취하·포기

1. 출원방식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출원의 취하서는 수리한다.
 - 1) 당해 하자가 “출원인”에 관한 방식상의 하자이고, 출원인이 취하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취하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2) 당해 하자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방식상의 하자이고,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취하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2. 포기된 특허·실용신안·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의 취하와 같이 선원의 지위를 남기지 않으므로 출원방식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때에 제출된 출원포기서는 상기 1과 같이 취급한다.
3.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 출원방식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때에 제출된 당해 출원의 포기서는 수리하지 않는다.

설 명

출원에 관하여 심사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출원인은 자유로이 당해 출원을 취하·포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출원인이나 대리인 또는 대리권에 관하여 방식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취하·포기절차를 밟는 자와 출원인이나 대리인과의 동일성 또는 대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출원취하·포기서는 수리하지 않는다.

한편 포기된 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보호법 제16조의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포기서를 수리하게 되면 하자있는 출원에 대하여 선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하자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포기는 소정의 방식상의 하자가 치유된 후에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7.5.



출원취하의 취하가 가능한지의 여부

1. 출원절차는 순수한 행정절차라기보다 민사소송에 준하는 준소송행위적 절차이고, 따라서 출원의 취하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취하에 상당하는 행위로서 특허청에 대한 일방적인 절차행위이다. 따라서 취하의 효력은 취하서가 특허청에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출원취하의 취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출원의 취하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도 출원취하의 취하가 거부되는지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착오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취하의 취하를 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백한 착오로 인정될 때에는 취하의 취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 판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여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7.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의 절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류중인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동법§350)되므로 파산관재인이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이 절차의 수계신청서에는 관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 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파산선고 후에도 종래의 대리인이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관재인의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7.



정보제공에 대한 취급

특허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간행물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정보제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특§63의2). 다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2.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간행물 등의 증거서류 1통과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칙§45)
3.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인이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특§28의2·특칙§9②)
4.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약식의 방식심사만을 행한다. 따라서 정보제출서에 제출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영업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제출한 경우 또는 잘못 기재된 정보제공서류는 적법한 정보제공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나 반려나 무효처분을 하지 않고 심사에 참고하도록 수리한다.(심사지침서 p5148 참고)



8. 기 간

8.1.



기간의 종류

1.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이 있다.
2. 법정기간이라 함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을 말한다.
3. 지정기간이라 함은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8.2.



특허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특허에 관한 법정기간 중 출원절차와 관계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 1)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특§59②)
- 2) 분할출원(특§52), 변경출원(특§53) 또는 이중출원(구 특§53)된 새로운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상기 5년의 기간경과 후에도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특§59③·구 특§59③)

2. 명세서·도면의 보정기간

〈2001. 6. 30. 이전 특허출원〉

- 1)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3월 이내(구 특§47①)
 - ① 특허출원일
 - 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특§54)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③ 국내우선권주장(특§55)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 선출원일
 - ④ 상기 ②와 ③의 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 있어서는 최선일
- 2) 상기 1)의 해당일부터 1년3월을 경과한 후 특허결정등본의 송달전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간(구 특§47②)
 - ① 출원심사의 청구(특§59)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 ② 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청구가 있는 뜻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3월 이내에 보정할 경우
- ③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제출기간(특§63)내에 보정할 경우
- ④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경우

〈2001. 7. 1. 이후 특허출원〉

특허결정서를 송달하기 전(다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최초거절이유 통지 전)까지의 기간(특§47)

- ①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
-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3. 분할출원 가능기간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과 같다(특§52)

4. 변경출원 가능기간(선출원이 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1)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특§132조의3)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특§53)

2)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특§132조의3)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실§10)

5. 이중출원 가능기간(선출원이 1999. 7. 1. 이후 2006. 9.30. 이전 출원에 적용)

1)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로 이중출원 할 수 있는 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후 1년이 되는 날까지(구 특§53①)

2)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①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구 실§17①)

②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구 실§17①)

단,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5년 이내)

특허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다만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전 6월 이후에는 불가(특§90②)

7. 출원공개 시점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특§64)

- 1) 특허출원일
-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특§54)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3) 국내우선권주장(특§55)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 선출원일
- 4) 상기 2)와 3)의 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 있어서는 최선일

※ 상기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특§64)

8. 조기공개신청의 취하 가능기간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특칙§44③)

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가능기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특§54②)

10.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기간

다음의 날 중 최선일로부터 1년 4월 이내(특§54⑤)

-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 2) 선출원이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일
- 3) 선출원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일

11. 국내우선권주장출원 가능기간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특§55①)

12.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취하간주 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특§56①)

※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001.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출원된 출원인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한 때(구 특§56①)

13.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주장 취하가능 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특§56②)

14. 발명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가 적용되는 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된 때(특§30①)

-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①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②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
게 된 발명

-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위의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5. 발명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가 적용되는 증명
서류의 제출기간
출원일부터 30일 이내(특§30②)

16.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받기 위해 출원할 수 있는 기간
 - 1)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특 §34)
 -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되었음을 이유로 취소결정·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무권리자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 이내 또는 취소결정·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특§35)

17. 보정기간(특§46) 또는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특§79②)의 해태가 천재·지변이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처분 취소청구기간
 천재·지변이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지정된 기간(보정기간 또는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16②)

18.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 1) 최초의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 경과 후
 - 2)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 (특§219③)

19. 이의신청과 관련된 기간
 - 1)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 등록공고일부터 3월(구 특§69①)
 - 2)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 이의신청기간(등록공고일부터 3월)경과 후 30일 이내(구 특§70)

8.3.



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실용신안에 관한 법정기간 중 출원절차와 관계가 깊은 것은 다음과 같다.

1.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2006. 10. 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적용)

- 1)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실§12②)
- 2) 분할출원(실§11) 또는 변경출원(실§10)된 새로운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상기 3년의 기간경과 후에도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실§12③)

2.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기간

〈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 ①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구 실§13①·구 실칙§9)
- ② 구 법 제12조(기초적요건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지정기간내

〈2006. 10. 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의 기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실§11)

- ① 실용신안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 ②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
부터 30일 이내

3. 분할출원 가능기간

〈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 ① 구 법 제12조(기초적 요건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지정기간내
- ② 구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 등의 보정
가능기간(출원일부터 2월)내(구 실§16)

〈2006. 10. 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과 같다.(특§52, 실§11)

4. 변경출원 가능기간(선출원이 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 1)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특§132조의3)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
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실§10)

- 2)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3조에서 준용하는 특
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특§132
조의3)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특§53)

5. 이중출원 가능기간(선출원이 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출원인 경우에 적용)

- 1)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로 이중출원할 수 있는 기간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후 1년이 되는 날까지(구 특§53①)
- 2)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할 수 있는 기간
 - ① 특허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 ②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단,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출원공개 시점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실§15에 준용되는 특§64)

- 1) 실용신안등록출원일
-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특§54)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3) 국내우선권주장(특§55)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 선출원일
- 4) 상기 2)와 3)의 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 있어서는 최선일

※ 상기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실§15)

7. 조기공개신청의 취하 가능기간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실칙§17①)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가능기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실§11)

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기간

다음의 날 중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실§11)

-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 2) 선출원이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일
- 3) 선출원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일

10. 국내우선권주장출원 가능기간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실§11)

11.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 취하간주 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실§11)

※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001.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출원된 출원인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한 때(구 실§19①)

12.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주장 취하가능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실§11)

13. 고안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된 때(실§5①)

-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고안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위의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4. 고안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의 적용을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기간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실§5②)

15.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받기 위해 출원할 수 있는 기간

1) 무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날(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시(실§11)

2) 무권리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되었음을 이유로 취소결정·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무권리자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 이내 또는 취소결정·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시(실§11)

16. 보정기간(실§11) 또는 등록료 등의 납부기간(실§17③)의 해태가 천재·지변 기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처분 취소청구기간

천재·지변 등 기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지정된 기간⁵⁰⁾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실§3)

17.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 1) 최초의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 경과 후
- 2)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
(실§44)

50) 보정기간 또는 등록료 등의 납부기간

8.4.



디자인등록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1. 출원서·도면의 기재사항, 도면·사진·견본의 보정,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디자인등록여부결정서의 송달전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디§18④)
2. 분할출원 가능기간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디§19③)
3. 변경출원 가능기간(2005. 6. 30. 이전의 디자인등록출원)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구 디§20의2③)
4.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디§23②)
5.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서류 제출기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디§23④)
6.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된 때(디§8①)
 - 1) 디자인등록출원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날 또는 공연히 실시된 날

- 2) 디자인등록출원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표된 간행물에 기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날
7.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기간
출원일부터 30일 이내(디§8②)
8. 공개신청의 취하 가능기간
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디칙§6의2②)

8.5.



상표등록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1. 지정상품 및 상표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 1)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상§14)
 - ① 상표결정서의 송달전에는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가능
 - ②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상§70의2)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
터 30일 이내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내(상§81의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상§23②·상§45②·상§46의4②·상§48②)
 - 2)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상§15)
 - ①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상§23②·상§48②)
 - ②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내(상
§27①)
 - ③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청구일부
터 30일 이내(상§70의2)
2. 분할출원 가능기간
상표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
(상§18①)
3. 변경출원 가능기간(상§19)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상§19)

4.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가능기간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상§20②)
5.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제출기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상§20④)
6. 출원시의 특례규정의 적용기간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가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상§21①)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 4) 조약 당사국 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날
7. 출원시의 특례규정 적용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기간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상§21②)
8.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 또는 만료후 6개월 이내(상§43②)
9.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만료후 6개월 이내(상§46의2③)

8.6.



출원절차와 관련된 지정기간

출원절차와 관련되는 주요 지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특허청장이 기간을 정하는 경우

- 1) 출원·청구 등 절차의 보정을 명하는 경우(특§46·실§11·디§17·상§13)
- 2) 동일발명 등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어 출원인에게 협의를 시키는 경우(특§36⑥·실§7⑥·디§16⑤·상§8④)
- 3) 동일한 내용의 발명과 고안이 같은 날에 출원되어 출원인에게 협의를 시키는 경우(특§36③·실§7⑥)
- 4)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어 승계인에게 협의를 시키는 경우⁵¹⁾(특§38②③⑦·실§11·디§24)
- 5) 출원후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신고가 있어 신고인에게 협의를 시키는 경우(특§38⑥⑦·실§11·디§24)
- 6) 출원·기타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서류·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특§222·실§44·디§81·상§92)

2. 심사관이 기간을 정하는 경우

- 1)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시키는 경우(특§63·실§14·디§27·상§23)

51) 발명의 내용과 고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포함

- 2) 실용신안등록출원(2001.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출원에 한함)의 기초적 요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경우(구 실§12)
- 3) 이의신청이 있어 그 부분을 출원인에 송달하여 그 답변서를 제출시키는 경우(구 특§72·구 실§48·디§30②·상§27)
- 4)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 기타의 물건(모형 또는 견본, 시험 및 결과측정서 포함)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특§222·특칙§14·실§44·실칙§17①)

8.7.



특허법 제14조 기간계산 규정의 적용범위

1. 특허법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제14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2. 따라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제14조제4호의 규정은 그 기간이 법정기간인가 지정기간인가를 불문하고 출원 등의 절차에 관한 한 예외없이 적용된다.

8.8.



기간의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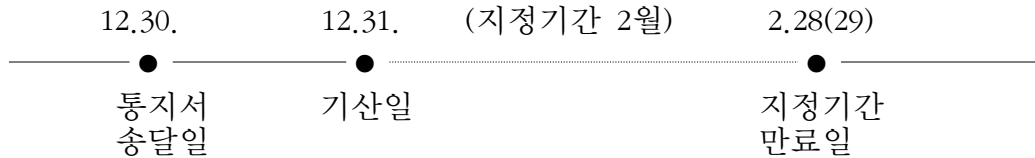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특§14 제1호)
2. 기간을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특§14 제2호)
3. 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특§14 제3호)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에 해당하는 때의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⁵²⁾(특§14 제4호)

52)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기간계산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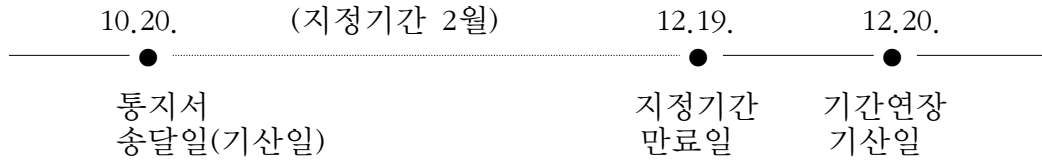
특허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간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0년 달력에 의하면 원심이 명세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한 1990. 1. 27은 설날 연휴이고, 1. 28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보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1. 29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출원인의 1990. 1. 29자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8 선고, 90후1680 판결).

◆ 기간의 계산에 관한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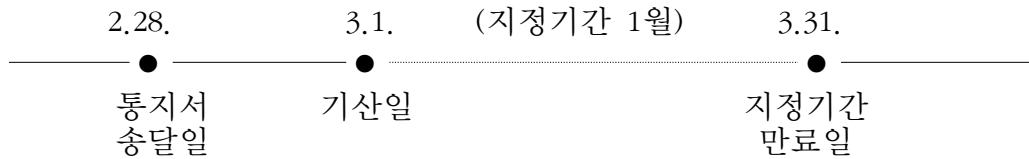
〈예1〉 최종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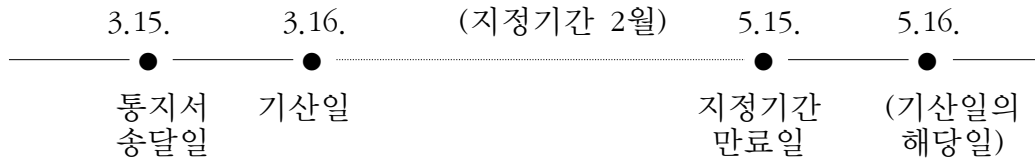
〈예2〉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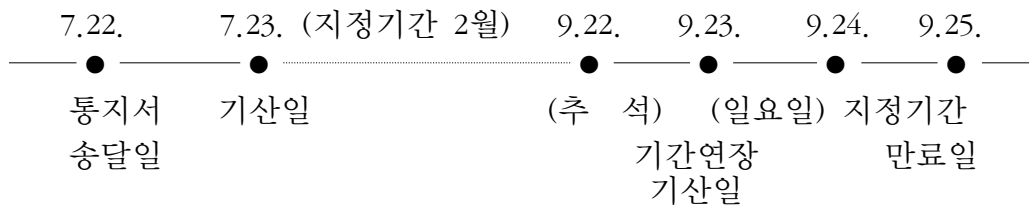
〈예3〉 月 또는 年の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



〈예4〉 月 또는 年の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5〉 지정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8.9.



기간의 연장대상 및 요건

1. 법정기간 중 연장이 가능한 기간
 - 1) 특허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구 특\$70①)
 - 2) 심판의 청구기간(특\$132조의3 또는 \$132조 4)
2. 지정기간은 모두 연장이 가능하다⁵³⁾.

53) 법정기간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경우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비하여, 지정기간은 청구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10.



지정기간의 지정절차

1. 특허법 제46조(실§11)등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하고,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월 이내로 한다.
2. 다만, 그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특칙 §16①)

8.11.



지정기간의 연장·단축절차

1. 절차의 보정과 관련된 지정기간의 연장은 월 단위로 한다.
2. 최종 기간연장승인시에는 “차후 기간연장은 승인하지 않음”이라는 예고문을 지정기간연장승인서에 기재한다.(출원규정§12④)
3.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 또는 연장된 기간내에 제출되고 연장신청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기간연장신청료(장수규칙§2제13호)가 적정하게 납부된 때에는 기간연장신청은 기간연장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4.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신청된 1회의 연장기간이 1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연장기간을 1월로 본다.(출원규정§12⑤)
5. 지정기간 또는 연장기간 경과 후에 지정기간연장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서를 반려한다.
6.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특§15②, 특칙§16①②)
7. 절차의 보정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출원규정§12②)

8. 의견제출통지시 지정기간(2개월)의 연장가능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에 대해서만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되 필요한 경우 초과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⁵⁴⁾(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23)
9.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보정요구서에 대하여 기간단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명세서 등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간단축이 수리된 경우 추후의 명세서 등 보정서는 반려한다.

54) 【초과기간 인정사유】

-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변경한 경우
-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로서 동 심사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신청서 제출시 해당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및 그 기초가 된 청구범위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함)
- ④ 의견제출통지서의 송달이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1개월 추가 연장 가능)
- ⑤ 원출원 또는 분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 ⑥ 거절이유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 ⑦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기간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제3자가 심사청구한 때에는 ①~⑤의 경우라도 불인정

8.12.



법정기간의 연장절차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15①·실§4)
 - 1)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구 특§70①·구 실§48·디§29의3·상§26)
 - 2)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특§132의3·실§23·디§67의3·상§70의2)
2. 법정기간연장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심사관(심판정책과)이 방식심사를 하여 흠결이 없으면 기간연장승인절차를 밟는다.
3. 법정기간 경과후에 법정기간연장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8.13.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의 기간계산

1. 특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정기간의 연장기간은 당초의 기간과 합산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기간을 형성한다.
2. 특허법 제14조의 “기간의 말일”은 당초의 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합산된 전체로서 하나의 기간의 말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3. 즉, 연장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며, 다음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된다. 따라서 당초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⁵⁵⁾에 해당하여도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의 기산일 계산에는 특허법 제14조제4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의 계산은 공휴일부터 시작된다.
4.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신청된 1회의 연장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의 연장기간은 1월로 본다.

[예] 1월 1일, 2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지만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기산일이 됨.

55)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8.14.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1. 기간연장신청시 수수료(기간연장신청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수수료를 기간연장승인기간까지 납부할 것을 명하면서(보정요구) 보정조건부로 기간연장 신청을 승인하기로 한다.
2. 연장승인기간까지 미납수수료(보정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료 포함)를 납부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간연장신청으로 인정한다.
3. 연장승인기간까지 당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며, 해당 기간연장신청은 무효처분한다.
4. 상기의 규정은 법정기간을 연장신청한 경우와 지정기간을 연장신청한 경우 모두에 적용한다.

8.15.



심사청구기간

1. 고객맞춤형심사제도 도입(특칙§ 40의3)

일률적인 심사처리기간 대신 고객이 심사처리 시점을 선택하는 「3 트랙 특허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2008. 10. 1.)

2. 빠른심사

특허출원 발명에 대하여 공인된 전문기관⁵⁶⁾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대상을 확대하였다.⁵⁷⁾

56) 총 4개 기관(한국특허정보원, (주)융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아이피솔루션(주))이 지정·운영 중

57) 우선심사의 대상

-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 방위산업분야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 관련출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각주 56 참조)에 선행기술 또는 디자인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 ※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07년 평균 2.2개월 소요)에 심사처리
- ※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시 비용(청구항수에 따라 증가) 발생

3. 늦은심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시기나 시장성 조사 등으로 인해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을 위한 제도이다.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특허심사 시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고, 발명이 조기공개되거나 특허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12)개월

3. 일반심사

일반적으로는 평균 16개월 이내('08년) 심사결과를 제공한다.



9. 수수료

9.1.



출원심사청구료

1. 출원심사 청구시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료 산정시 청구범위의 항수는 독립청구범위의 항과 종속청구범위의 항을 불문하고 1항마다 산정한다.
3. 심사청구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 불이행시에는 출원심사청구를 무효로 할 수 있다.(특§16)
4.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를 하는 자가 심사청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심사청구후에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보정서 제출시에 그 증가액(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산정)을 납부하여야 한다.(징수규칙§2①)
6.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특§82②)
7. 심사청구항이 보정에 의하여 삭제된 경우, 기납부된 심사청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9.2.



심사청구료 산출시 청구범위 항수 계산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청구료 산출시 대상 청구범위 및 동 항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청구료 산출시 그 대상인 청구항의 수(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거나 심사청구시까지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 최초 청구항수 : 3항 → 보정없음 → 심사청구시 심사청구료 ; 3항에 대하여 산출

2) 심사청구시까지 보정에 의하여 청구범위가 증감되었을 경우에는 최종 보정된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 최초 청구항수 : 3항 →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 2항 증가 : 5항 → 심사청구시 심사청구료 : 5항에 대하여 산출

☞ 최초 청구항수 : 3항 →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 1항 감소 : 2항 → 심사청구시 심사청구료 : 2항에 대하여 산출

3)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서의 제출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정후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 최초 청구항수 : 3항 → 보정(1항 삭제, 3항 추가)과 동시에 심사청구 → 심사청구료 : 5항(3항-1항+3항)에 대하여 산출

4) 심사청구후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의 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삭제항에 관계없이 증가된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 최초 청구항수 : 3항 → 심사청구시 심사청구료 : 3항에 대하여 산출 →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의 증감(1항 삭제, 3항 추가) : 3항에 대하여 산출(삭제된 1항은 무시, 추가된 3항에 대해서 심사청구료 부과)

2. 청구범위의 항의 수는 출원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항의 수로 계산한다(2개 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인 경우에도 1개 항으로 계산).

9.3.



상표출원의 보정후 상품류 구분 또는 지정상품 변동에 따른 수수료 계산

상표출원의 보정에 의하여 상품류 구분 또는 지정상품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수납한다.

1. 보정후 상품류 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보정료에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 보정후 보정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지 않고 지정상품에만 변동이 있는 경우, 보정료만 납부

※ 보정료 및 출원료

-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 3,000원, 서면 제출 13,000원
- 출원료(1 상품류 구분마다) : 전자출원 56,000원,
서면출원 66,000원)

9.4.



다류지정상표출원의 분할출원시 수수료 계산

상표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분할출원수수료를 적용⁵⁸⁾함에 있어서는 분할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수수료와 분할출원수수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1. 분할출원료 10,000원을 징수하는 경우

- 1) 다류출원중 특정류의 전체 지정상품을 분할출원 하는 경우
- 2) 원출원은 1개류 출원이었으나 다류출원으로 보정(보정시 신규출원료를 납부)한 후 분할출원 하는 경우

2. 신규출원료(56,000원/66,000원)를 징수하는 경우

- 1) 특정류(1개류)중 일부 지정상품만 분할하는 경우
 - 1개류의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를 그 류 또는 다른 류로 분할
- 2) 특정류(1개류)중 포괄명칭 또는 타류에 해당하는 일부 지정상품을 새로운 류로 분할하는 경우

※ 상표출원은 상표출원으로 서비스표는 서비스표로 동일권리내에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함.

58) 기예56010-212(2002.8.26) 수수료징수규칙 제6조제1호사목의 해석 참조

3. 신규출원료(56,000원/66,000원) + 분할출원료 10,000원을 징수하는 경우
다류출원중 일부 지정상품의 류를 변경하고, 그 류를 분할출원하였을
경우

(예 : 1,2,3류에서 2,3류의 지정상품 일부를 4류로 변경과 동시에 1류
전체를 분할출원)

※ 분할출원시에는 지정상품의 추가는 불가능하며, 지정상품을 추가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하여야 함을
유의한다.

※ 분할출원시 원출원표시를 오기재한 경우에는 상칙§2①에 의거 서
류의 종류가 불명확함을 이유로 반려한다.

9.5.



수수료의 반환

1. 반환대상

- 1) 잘못 납부된 수수료(과오납)
- 2) 출원서류가 불수리(반려)되었을 때 납부한 모든 수수료
- 3) 출원이 무효가 되었을 때, 출원시 함께 납부한 수수료 중 출원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심사청구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등록료)
- 4) 우선심사가 각하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한 우선심사신청료(징수규칙 §2①8)
- 5)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 해당분
- 6)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 7)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포기한 경우 기납부된 출원료, 심사청구료(분할·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분할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

2. 반환기간

반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 반환신청인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수신인 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자

4. 반환절차

- 1) 출원서비스과에서는 출원무효처분통지서 등에 반환절차 안내문을 게재하고 과오납 사유 발생시에는 납부자 및 재무관(확인 요청시)에게 통보
- 2)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반환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온라인·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다만, 온라인으로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는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반환대상 선택과 계좌정보를 입력)
 -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복납부 및 기간경과 납부 등으로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
 - 반환신청인의 예금계좌 사본(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시에만 제출)
 -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통(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9.6.



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1. 근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9 및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특허청고시 제2006-12호, 2006. 7. 1.)

2. 정정신청대상

- ① 민원인은 수수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은행이 영수증의 기재사항(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 ② 민원인이 수수료 등의 적정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착오에 의하여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 ③ 민원인이 착오에 의하여 정당납부일에 같은 납부자번호로 2회 납부한 수수료 등을 정당한 납부자번호와 정당한 금액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④ 보정통지서에 의하여 부족 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 기한 경과로 반환되는 수수료 등의 납부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3. 정정신청기간

납부일부터 3월 이내(단, 정정신청대상 중 ②, ③은 민원인이 착오를 발견하여 특허청의 불수리통지서 통보 전까지)

4. 정정신청인

출원료등 수수료영수증의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5. 정정신청절차

- ①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수수료납부사항정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다만, 온라인으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정대상을 입력)
 -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복수납 및 기간경과 납부 등으로 과오납통지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
 -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통(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② 방식심사관은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수수료 납부내용을 정정

9.7.



수수료가 미납된 서류 (기간연장신청서·보정서 등)의 취급

1. 수수료 납부대상인 서류(기간연장신청서, 보정서 등)의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다. 그 지정된 기간내에 미납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정당한 서류로 인정한다.
2. 지정된 기간까지 당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서류를 무효처분 할 수 있다.
3. 지정기간은 경과되었으나 무효처분일 전에 미납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정당한 서류로 인정하여 수리한다.

9.8.



수수료의 감면

1. 근거법령

특허법 제83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2. 감면대상 수수료 및 감면율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다음의 수수료 및 등록료〉(주의 : 상표 제외)

구 분	감면대상 수수료	감면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재학생에 한함, 기능대학의 재학생 포함) 만19세 미만인 자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100% (70%)
출원인과 발명(고안·창작)자가 같은 경우 소기업 중기업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 등록료,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7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⁵⁹⁾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 등록료	50%

5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에 의한 출원의 경우 특허·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를 50% 감면한다.

3. 감면신청시기 및 절차

출원료 등을 감면(면제)받기 위해서는 출원시, 심사청구시, 권리설정등록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서, 등록료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감면대상을 기재하고,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감면대상자였음을 이유로 하는 감면신청은 불인정한다.

※ 출원시, 심사청구시, 권리설정등록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서, 등록료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감면대상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자가 납부한 출원료 등의 감면분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한 때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반환신청서를 그 때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면대상자별 감면요건 및 증명서류 <별표>

○ 면제 요건

- 발명자(고안자,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하여야 한다.

○ 면제 건수의 제한

-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포기된 건 제외)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 등록료를 면제한다.(징수규칙\$7①)

5. 감면대상여부의 판단

○ 판단시기 : 감면신청시 기준

- 출원시 감면대상이 아니었으나 심사청구시 감면대상인 경우는 심사청구료 감면
- 출원시 감면대상이었으나 심사청구시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는 비감면

○ 공동발명(고안·창작)인 경우의 감면여부

- 공동발명자 모두가 공동출원하지 않더라도 출원인이 공동발명자로만 되어있으면 감면(단, 출원인중에 일부라도 발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비감면)

○ 감면자와 (비)감면자의 공동 출원인 경우

- 감면자 + 비감면자 : 감면없음
- 면제자 + 면제자 : 면제
- 면제자(국가포함) + 감면자 : 감면자 수수료 적용
- 감면자 + 감면자 : 감면액이 적은쪽 수수료 적용

6. 외국인의 경우

조약 동맹국의 개인발명가가 한 출원에 한하여 감면⁶⁰⁾

60) 외국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규정(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발명의 장려와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발명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발명가 등의 출원·등록비용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수수료징수규칙에 반영한 것이므로 감면 대상은 내국인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2조 규정에 의한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의 원칙상 동맹국 국민은 각 동맹국의 법령이 내국민에 대하여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할 이익을 향유해야 하므로 동맹국의 개인발명가 출원에 대하여도 동규칙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법무 56010-5, '98. 1. 15.)

〈별 표〉

감면대상	감 면 요 건	증 명 서 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재학증명서
만19세 미만인자		없음
개인출원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예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명세표 등 3. 자본금, 매출액 확인서류(예시) 재무제표 사본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경우	1.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이전 전담 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감면대상	감 면 요 건	증 명 서 류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③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해당 증명서류 없음 없음 없음 해당 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 등을 1/2이상 출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편 부 록



1. 연도별 방식심사지침서 변경 · 보완 사항

1.1. 2000년

- 「방식심사지침서」 발간

1.2. 2002년

-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의 내용 추가
- 개정 법령, 출원절차, 법원판례, 심사사례 등 반영

1.3. 2006년

- 「출원방식심사지침서」로 제호 변경
- 주요 변경사항
 - 변경출원에 관한 내용 추가
 - 상표출원의 보정시 지정상품 변동에 따른 내용 개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내용 추가

1.4. 2008년

- 편집체계 개편
 - 기존의 2편(출원절차 일반사항, 방식심사 기준)을 3편으로 개편
 - 제1편 출원절차 일반
 - 제2편 출원방식심사 일반
 - 제3편 출원방식심사 기준
 - 관련성 있는 주제끼리 정리하여 항목을 통폐합

○ 주요 변경사항

- 변경 내용

- 제출서류의 반려 규정 (p37)
- 출원인(대리인)의 인장 (p79)
- 재외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 (p96)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 (p122)
- 서류의 사용어 (p135)
- 상표의 변경출원 (p154)
-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경우 (p169)
- 1건의 서류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의 취급 (p178)
-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보정서 등의 취급 (p183)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 (p187)
- 상표등록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p230)
- 지정기간의 연장·단축절차 (p239)
- 수수료의 감면 (p260)
- 출원 관련 수수료 (p297)
- 기타 서식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 추가 내용

- 법령이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의 유형 (p36)
-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p73)
- 출원·등록건의 일괄 정보변경 체계 (p80)
-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p93)
-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p101)
- 특허청구범위를 미기재한 출원서에 대한 처리 (p136)

- 기준일 이전에 제출된 명세서 등 보정서 (p179)
- 출원인변경신고 중 법인과 이사와의 거래 (p202)
- 심사청구기간 (p244)
- 연도별 방식심사지침서 변경·보완 사항 (p267)
- 관련 법령중 상법, 행정절차법 추가 (p284)

2. 관련 법령

2.1.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 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

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 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 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 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 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 반수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 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 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삭제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약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2.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선정당사자의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①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법정대리인의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특별대리인) ①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로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④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후견인(後見人)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

⑤특별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분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3. 상 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본문·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중 “이사회”는 이를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522조의3제1항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신설 1998.12.28, 1999.12.31〉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390조 내지 제392조, 제393조제2항, 제399조제2항,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12.28〉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규정된 이사회 기능에 담당한다.〈신설 1998.12.28〉

제391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31〉

③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1.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2.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5.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7조(처분의 신청) ①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 ③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④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⑤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⑥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⑦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정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상시 근로자)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

②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자본금)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②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매출액) ①제3조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나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1]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호 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1. 제조업	D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라 함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라 함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특허신탁관리업”이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중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을 가진 자를 위하여 그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자)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사업화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등록·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3. 기술이전 및 활용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4. 기술이전·사업화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현황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1. 한국개발연구원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한국과학기술원
2. 한국조세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광주과학기술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4. 통일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한국원자력의학원
6. 한국행정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한국과학재단
8. 산업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 한국해양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은 관련 법령에 근거 법인으로 설립됨.

4. 주요기간 일람표

구분	절 차	적용권리	기준일【말일】	법정(지정)기간	연장가능여부	근거규정	비 고
보정 · 판정·재판에 의한 보정	◦ 명세서·도면의 보정 ◦ 분할출원(특52·실11) (보정가능기간에 분할가능)	특·실	결정통지서 송달 일 전까지		×	특47①(실11)	
			의견서제출기간 내		○	특47①(실11), 특칙16	
			거절불복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	특47①(실11)	
	◦ 출원(도면, 견본)의 보정 ◦ 분할출원(디19·상18) (보정가능기간에 분할가능)	디자인	결정통지서 송달일 전까지		×	디18	
		상표	출원공고통지서 송달일 전까지		×	상14	
		디·상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	디18, 상70의2	
			의견서제출기간 내		○	디27, 상23	
이의신청			의의신청서 답변서 제출기간 내		○	상27	
	명령에 의한 절차(방식)보정	공통	보정통지서의 발송일	1월	○	특46(실11), 디17, 상13, 특칙16	
	이의신청	상표	출원공고일	2월	×	상25	
		디자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후 디자인무심사등록 공고일로부터	3월	×	디29의2	디자인무심사출원만 해당
	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디·상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	디29의3 상26	
	공지예외	특·실	공개(출품, 간행물 게재일 등)된 날로부터	6월	×	특30①, 실5①	
		디자인	디자인무심사등록 공고일로부터	30일	×	디8①	
		상표	발표회 종료일로부터	30일	×	상21①	
우선권주장	공지예외·신규성상실의 예외·출원시의 특례주장 증명서류 제출	특·실·디·상	출원일로부터	30일	×	특30②, 실5②, 디8②, 상21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특·실·디·상	최초 제1국 출원일로부터	특·실 1년 디·상 6월	×	특54②(실11), 디23②, 상20② 파리조약4조(1)·E(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	특·실	최초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4월	×	특54④(실11),	분할·변경·이중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월내
		디·상	출원일로부터	3월	×	디23④, 상20④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특·실	최선출원일로부터	1년	×	특55①(실11)	선출원이 분할·변경, 이중출원 및 등록여부결정건 등은 불가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증명서류 제출	특·실	최선출원일로부터	1년4월	×	특55③(실11)	
	우선권주장 보정·추가	특·실	최선출원일로부터	1년4월	×	특54⑦, 특55⑤, 상11	
이중·변경출원의 요건	국내우선권주장시 선출원의 취하간주시기	특·실	선출원일로부터	1년3월		특56①(실11)	
	이중출원 (특·실의 상호간)	특·실	특허결정서 송달일 전(특·실)		×	구특53①·구실17①	원출원이 1999.7.1 이후부터 2006.9.30 이전 출원에 한함
			거절결정서 도달일로부터(특·실)	30일	○ (심판청구 기간 연장의 경우 그 연장기간전)		
			설정등록일로부터(실-특)	1년	×		
	변경출원	특·실 (2006.10.1 이후 출원에 한함)	최초거절결정등본 도달일로부터	30일	○	특53, 실10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경과전
		상표 (상표-서비스표)	결정(심결)확정일 전까지		×	상19③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특허	허가등을 받은날로부터	3월		특88, 특89·특90②	
조 소 기 간 연 장 · 갱 신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신청)	상표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상43②, (상46의2③)	
			존속기간 만료후	6월			

4. 주요기간 일람표

구분	절 차	적용권리	기준일【말일】	법정(지정)기간	연장가능여부	근거규정	비 고
존속 기간	권리존속기간	특	출원일	20년	×	특88	
		실	출원일	10년	×	실22	
		디	디자인권설정등록일	15년	×	디40	
		상	상표권설정등록일	10년	○	상42	갱신가능
	정당한권리자의 출원	특살디	특허(등록)받지 못하게된 날로부터	30일	×	특34(실110), 디14	
			무효(취소)심결확정된 날로부터	30일	×	특35(실11), 디15	
			무권리자의 등록공고일로부터	2년	×	특35(실11),	
	출원심사청구	특실	출원일로부터	특5년, 실3년	×	특59②, 실12②	
			분할, 변경(이중)출원일	30일	×	특59③, (구특59③), 실12③	
	출원의 공개	특실	출원일,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일, 20이상 우선권 주장시 선출원일중 최선일로부터	1년6월 경과 후		특64(실15)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의 도래와 관계없이 공개
	발명(고안, 창작)자 추가정정	특살디	등록여부결정전			특칙28(디칙28), 실칙7	명백한 오기
			설정등록전				
	특허(등록)료 납부	특살디	등록결정(심결)등본 도달일	3월	×	특79, 실16, 실29, 디31, 징수규칙 8⑤	추납기간인정 (6월)
		상표	등록결정(심결)등본 도달일	2월	○	상34, 징수규칙8⑦	1회(30일) 연장가능
비 례 · 수 수 료 반 환	특허(등록)료 추납기간	특살디	납부기간의 말일	6월	×	특81(실20), 디33, 징수규칙8⑥	
	등록료 납부기간연장	상표	등록료납부기간경과전		0	상35, 징수규칙8⑦	30일 이내 연장가능
	수수료반환청구	공통	반환대상 통지 받은 날	3년	×	특84, (실20) 디36, 상38	
	처분의 취소 및 추후 보완	공통	불가피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	특16②(실3디4상5) 특17(실3디4상5)	
			법정(지정)기간 만료일	1년	×		
공시 송달	무효처분의 취소	공통	불가피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	특16②(실3디4상5) 특17(실3디4상5)	
	절차의 추후보완	공통	법정(지정)기간 만료일	1년	×		
공시 송달	공시송달효력발생시기	공통	공보게재일로부터	2주일 경과 후		특219③(실44디81상92)	제차 의뢰시는 게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심판 관련	거절결정불복심판	공통	결정등본의 도달일	30일	○	특132의3(실33), 디72, 상70조의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다상	결정등본의 도달일	30일	○	디67의2, 상70조의3	

5. 출원관련 수수료

(2009. 1. 1. 기준 ★표는 면제·감면 대상 수수료)

5.1. 출원료

구 분 권 리		특 허 ★	실용신안 ★	디 자 인 ★		상 표
				심 사	무 심 사	
전자출원 (온라인, FD)		38,000원	17,000원	60,000원	1 디자인마다 45,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갱신추납: 85,000원)
서면출원	기본료	38,000원	17,000원	70,000원	1 디자인마다 55,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갱신추납: 95,000원)
	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가산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가산	없음	없음	없음

※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78,000원★

5.2. 우선권주장신청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구 분 권 리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심 사	무심사	
우선권 주 장	신청료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20,000원
	추가료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청구료 ★	기본료	130,000원	65,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40,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17,000원	없음	없음	없음
우선심사 신 청 료		167,000원	86,000원	70,000원	70,000원	없음

5.3.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이중출원료★

(1) 변경출원료

- 특허↔실용신안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서비스표 : 매 건 10,000원

(2)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을 디자인심사등록분할 출원하는 경우(2005. 7. 1. 이후 출원) : 25,000원

(3) 이중출원료(1999.7.1~2006.9.30. 출원에 한함)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 단, 분할, 변경, 이중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면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

5.4.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1999.7.1.~2006.9.30. 출원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 기본료 : 매 건 86,000원
- 가산료 :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 가산

5.5. 보정료 및 보완료

- (1)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도면·견본 등)
구분없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000원,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3,000원
- (2) 디자인변경 보정료(2005.7.1. 이후 출원은 출원서등 보정서로 작성)
 - 단독↔유사, 심사→무심사 변경은 상기 절차보정료와 동일
 - 무심사→심사 변경은 전자문서 제출: 18,000원, 서면 제출: 28,000원
- (3)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 매건 3,000원(단, 보정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가산)
 - 서면 제출: 매건 13,000원(단, 보정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가산)
- (4) 보완료(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0,000원

5.6. 기타

- (1) 출원인변경신고료
 - 매건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6,500원(2006.5.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2)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3)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 1디자인마다 20,000원
- (4) 디자인등록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4,000원
- (5) 이의신청료 : 매건 11,000원

총 필		
출원서비스과장		이 태 인
편 집 위 원		
행 정 사 무 관 행 정 주 사	문	기 권
	칙	양 순
전 산 주 사 6 급 건 습	신	정 옥
	칙	준 영
	박	인 화
	김	훈 건
김 수 위 원		
행 정 사 무 관 행 정 주 사	권	도 훈
	강	경 호
	문	한 규
	김	명 희
공 업 주 사	임	채 기
	김	재 민
	이	준 희

출원방식심사지침서

발행일 : 2008년 12월

발행처 : 특허청 출원서비스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문 의 : TEL. 042)481-8563, 5541